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11년 기준 조사

2012. 12





# 목차 | CONTENTS

I .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1
1. 조사방향 .....	3
2. 조사목적 .....	4
3. 특징 .....	5
4. 조사내용 및 방법 .....	9
4.1 조사설계 .....	9
4.2 조사대상 .....	9
4.3 조사단위 .....	11
4.4 조사절차 .....	11
4.5 조사모집단 .....	12
4.6 표본규모 .....	16
4.7 시장규모 추정 .....	17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	19
II .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	23
1. 사업체 수 .....	25
1.1 모집단 사업체 보정 .....	25
1.2 설립년도 .....	26
1.3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	28
1.4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	29
III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31
1. 총괄 .....	33
1.1 2011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	33
1.2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	34
1.3 스포츠산업 노동유발계수 .....	37



2. 매출액 .....	41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	41
2.2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	43
3. 종사자수 .....	44
3.1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 .....	44
3.2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	46
4. 사업실적 .....	48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	48
4.2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	50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	51
5. 인력총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	53
5.1 사업종류별 인력총원 현황 .....	53
5.2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54
6. 특성항목 .....	56
6.1 운동 및 경기 용품 내수 및 수입액 현황 .....	56
6.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	58
6.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	59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	60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	60
8. 성과 및 제언 .....	64
8.1 성과 .....	64
8.2 제언 .....	65
IV. 부록 .....	67

# 목차 | CONTENTS

## 표 차례

I. 2011년 기준 조사개요 .....	3
〈표 I-1〉 2011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분류 .....	8
〈표 I-2〉 조사대상 .....	10
〈표 I-3〉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	13
〈표 I-4〉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	14
〈표 I-5〉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 .....	16
〈표 I-6〉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 .....	17
II.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	25
〈표 II-1〉 09~11년도 기준 모집단수 비교 .....	25
〈표 II-2〉 15개 공표단위(중분류) 별 사업체수 현황 .....	26
〈표 II-3〉 설립년도 비율 .....	27
〈표 II-4〉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	28
〈표 II-5〉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	29
〈표 II-6〉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	30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33
〈표 III-1〉 09~11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	33
〈표 III-2〉 연도별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	34
〈표 III-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	36
〈표 III-4〉 2000~2009년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 .....	39
〈표 III-5〉 2000~2009년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 .....	40
〈표 III-6〉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	41
〈표 III-7〉 사업종류별 매출액 .....	42



〈표 Ⅲ-8〉 종사자수별 매출액 .....	43
〈표 Ⅲ-9〉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	44
〈표 Ⅲ-10〉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	45
〈표 Ⅲ-11〉 종사자 수별 종사자 .....	46
〈표 Ⅲ-12〉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및 비중 .....	48
〈표 Ⅲ-13〉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	49
〈표 Ⅲ-14〉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	50
〈표 Ⅲ-15〉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2011년) .....	52
〈표 Ⅲ-16〉 사업종류별 인력총원 .....	53
〈표 Ⅲ-17〉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54
〈표 Ⅲ-18〉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	56
〈표 Ⅲ-19〉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임대업 상품별 구성비 .....	57
〈표 Ⅲ-2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	58
〈표 Ⅲ-21〉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	59
〈표 Ⅲ-22〉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	60
〈표 Ⅲ-23〉 육성발전 장애요인 .....	61
〈표 Ⅲ-24〉 육성발전 지원부문 .....	62
〈표 Ⅲ-25〉 매출 증대방안 .....	62

## 그림 차례

I . 2011년 기준 조사개요 .....	3
【그림 I-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	14
【그림 I-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	14
【그림 I-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 .....	17
II .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	25
【그림 II-1】 09~11년 기준 모집단수 비교 .....	25
【그림 II-2】 설립년도 비율 .....	27
【그림 II-3】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	29
【그림 II-4】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	30
III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33
【그림 III-1】 연도별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	34
【그림 III-2】 부가유발계수 추이 .....	37
【그림 III-3】 취업유발계수 추이 .....	39
【그림 III-4】 고용유발계수 추이 .....	40
【그림 III-5】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2011년) .....	42
【그림 III-6】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2011년) .....	43
【그림 III-7】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2011년) .....	46
【그림 III-8】 종사자 수별 종사자수 비율(2011년) .....	47
【그림 III-9】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2011년) .....	50
【그림 III-10】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2011년) .....	51
【그림 III-11】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2011년) .....	52



【그림 Ⅲ-12】	사업종류별 인력총원 .....	53
【그림 Ⅲ-13】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55
【그림 Ⅲ-14】	운동·경기용품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	56
【그림 Ⅲ-15】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임대업 상품별 구성비 .....	57
【그림 Ⅲ-1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연간 이용객 비교 .....	58
【그림 Ⅲ-17】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	59
【그림 Ⅲ-18】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2011년) .....	60
【그림 Ⅲ-19】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2011년) .....	61
【그림 Ⅲ-20】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2011년) .....	62
【그림 Ⅲ-21】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2011년) .....	63





## 이용자 도움말

1. 본 조사 자료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스포츠산업통계조사(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1321호) 결과를 종합 집계, 분석한 결과이며, 조사주기는 1년임
2. 스포츠산업은 2007.4.6 개정(법률 8333호)된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이라고 정의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본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특수분류로 분류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 2」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함
3. 본 조사는 스포츠산업(중분류)을 모집단으로 한 후 전국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를 추정하였으므로 자료 이용 시 전국 단위 및 중분류 이상 단위로만 활용하여야 함
4. 조사결과는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및 타조사 자료인용으로 이루어짐
5. 조사수행기관은 통계청 통계대행과가 자료수집, 산출 등 총괄적인 조사를 진행함
6. 실태조사 결과 중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영업비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이용에 참고하기 바람
7. 조사항목별 집계과정에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이로 인하여 하위분류의 합계가 상위분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8. 본 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집계하였으나 기업회계 기준에서 업종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업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9. 내검과정에서 전년도 조사실적에 오류가 발견된 사업체는 수정 보완하여 집계하였음
10. 해당 자료가 없거나 미상일 경우는 [-]을 표시함
11.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00페이지에서 전재 또는 역재”라고 기재하여야 함
12. 본 보고서에 실린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2-3704-9853),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정책개발연구실(02-970-9573)에 문의바람. 조사결과 및 분석내용은 스포비즈([www.spobiz.kr](http://www.spobiz.kr))에서도 볼 수 있음





# I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I .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1. 조사방향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2011년 기준조사까지 5회가 진행된 사업이며, 국가승인통계로서는 2009년 기준조사부터 3회 째 실시된 사업임
  - 2008년 기준조사까지의 스포츠산업 통계는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조사·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의사결정의 실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산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따라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정확한 모집단을 기초로 산출되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지정(2010년)받고 2012년 세 번째로 사업을 진행함
- 2010년 기준조사에서 연도별, 부문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구축 틀을 활용하여 2011년 기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조사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스포츠산업의 대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함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대규모 모집단을 통한 대표성 확보
- 2011년도 기준조사에서 나타난 모집단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 전 모집단 정비를 실시함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45개 세세분류 중 21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공식적인 지표 활용을 위해 국가승인지정통계를 유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함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 DART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검증을 실시함
  - 모집단 정비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수를 추정함
- 2010년 「범정부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스포츠산업정보데이터의 가치 및 활용성 증대

## 2. 조사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특수분류(스포츠산업)의 적용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유지
  - 기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정책의사결정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사업 이였지만, 2009년 기준조사부터 2011년도 조사까지 국민에게 스포츠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등을 알리기 위한 공표의 목적을 두고 진행함
- 최신 모집단 확보 목적
  - 모집단 파악은 통계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2011년 기준조사에서는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결과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리스트를 표본추출 틀로 활용하여 최신 모집단 확보에 주력
  - 모집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총 45개 세세분류 중 21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스포츠산업 정책 활용 목적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의 공식적인 지표 활용의 극대화 추구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사를 통한 공표
  - 스포츠산업의 특성상 영세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조, 자료수집원 교육, 각 지자체의 사업체 DB 등을 이용한 체계 구축
- 총량개념의 통계를 통한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 및 동향을 파악
  - 스포츠산업시장의 전체규모 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 인력채용 현황, 영업손익 등 총량개념의 통합적인 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음
  - 스포츠산업시장의 사업체 경기전망, 인력채용 현황 등의 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서비스업의 경우 연간이용객 현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3. 특징

#### ■ 모집단 보완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잠정)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45개 산업세세분류 중 21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를 사용

####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청(사무소)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수행
  - ※ 조사관리자 3명을 포함한 조사원 60명, 공무원 59명 활용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스포츠음료 제조업,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Mixed Mode Survey를 활용한 단계적 실시
  - ※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원칙(자기기입식 병행)으로 하고 표본사업체 수가 적은 일부는 우편과 응답자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조사 병행

####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QR코드 삽입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사전 조사자료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결과 내검 및 집계 철저히 통계정확성 제고

## 1.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2010년 기준조사와는 달리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의 기획부터 보고서 생산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국가통계생산 표준프로세스(KSBPM : Korea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시킨 업무프로세서로 기관 간 통계경험과 전문성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점검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2년 사업체기초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DART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 2011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분류 변화 적용 유지

- 국가승인통계 지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를 적용하여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함
- 2011년 기준조사는 4개의 대분류, 15개의 중분류, 45개의 하위분류인 「산업특수분류」를 근거로 실시하되 스포츠산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분류에 항목을 추가하였음
- 각 업종별 하위업종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2011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에 명시된 부문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함
- 스포츠미디어 분야는 특수분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스포츠산업 진흥 기반에 필요한 분야이며 2차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통계산출이 가능하기에 스포츠방송업, 스포츠신문업 등을 포함시킴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중분류4, 소분류17)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중분류7, 소분류21)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중분류3, 소분류5)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중분류1, 소분류2)



## ■ 산업연관분석

- 2010년 기준조사에서 분석한 산업연관분석을 재명시하였음
- 사업종류별(대분류)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및 노동유발 효과 등을 분석하므로 스포츠산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를 확인함
- 단, 스포츠산업의 산업연관분석은 직접 산출하지 않으며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근거해서 산출함

# 1.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표 1-1〉 2011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1-1-1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스포츠음료(알카리성 이온음료)
			1-2-1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1-2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2-2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구명자켓, 구명벨트
			1-2-3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1-2-4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부분품
	1-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1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등산용 배낭
			1-3-2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1-3-3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1-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1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1-4-2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범선, 요트, 카누, 카약
			1-4-3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1-4-4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4-5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4-6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1-4-7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4-8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볼링용구, 당구용구
1-4-9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	경기장 운영업	2-1-1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2-1-2	91112	실외경기장 운영업	
			2-1-3	91113	경주장 운영업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2-1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2-2-2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미디어(방송,신문)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1	91121	골프장 운영업	
			2-3-2	91122	스키장 운영업	
	2-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4-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4-3	91133	수영장 운영업	
			2-4-4	91134	볼링장 운영업	
			2-4-5	91135	당구장 운영업	
			2-4-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2-4-7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8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2-4-9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		
	2-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2-5-1	91231	낚시장 운영업	
			2-5-2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2-6	캠핑 및 벤틀업	2-6-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토토
2-6-2			91249	기타 캠핑 및 벤틀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벤틀시설	
2-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	73901	매니저업	스포츠인 매니저	
		2-9-2		그 외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3-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1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2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및 부품 도매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3-2-1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2-2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소매
	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3-3-1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4-1-2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

\*스포츠미디어(방송,신문)는 특수분류에 미포함부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포함시킴



## 4. 조사내용 및 방법

### 4.1 조사설계

조사 지역	→	• 전국(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조사 범위	→	•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표본 (Sample) 크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540개 업체</li> <li>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982 개</li> <li>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865 개</li> <li>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 447 개</li> <li>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246 개</li> </ul>
조사 내용	→	• 사업체 일반현황,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특성항목, 사업체 경영전망, 설문문항 등(16개 항목)
조사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 관할 표본사업체수가 적은 경우 해당 사업체는 본청에서 우편조사, e-mail조사를 병행 실시</li> <li>• 응답자의 회신 편의성을 고려한 전화, 이메일, Fax 조사 병행</li> </ul>
조사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조사 2012. 07. 09. ~ 08. 10</li> <li>• 면접조사 2012. 09. 03. ~ 09. 14</li> </ul>

### 4.2 조사대상

■ 본 조사는 조사기준일(201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며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함

- 본 조사에 포함되는 스포츠산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 4개 산업을 대분류로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함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가방 및 신발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으로 구분

## 1.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경기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갬블링 및 베틱업,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으로 구분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은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구분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포함

〈표 1-2〉 조사대상

대분류	중분류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스포츠음료)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구멍자켓, 구멍벨트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의류 부분품 등)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산용 배낭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등)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범선, 요트, 카누, 카약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볼링용구, 당구용구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 용품 등)
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경기장 운영업
	■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상 스포츠시설 운영업
	■ 갬블링 및 베틱업
	■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4.3 조사단위

■ 사업체 단위: 단독사업체, 지사(지점) 등

■ 개별 사업체 「본사(지사 제외), 지사(점), 영업소 등」 별 조사표 작성

- 본사와 지사가 표본으로 동시에 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체 단위 조사
- 본사단위: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음료제조업 등 일부 업종

### 4.4 조사절차

구분	주요 업무 내용	관련기관 및 부서
준비 단계	조사항목 설정 및 조사표 설계	체육과학연구원, 통계대행과
	↓	
	표본설계	체육과학연구원, 통계대행과, 표본과
	↓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통계대행과
	↓	
	입력·내검을 위한 나라통계 시스템 점검	통계대행과
	↓	
현장 조사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표류 인쇄	통계대행과
	↓	
	조사원 채용	지방청(사무소)
	↓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체육과학연구원, 통계대행과 지방청(사무소)
	↓	
	준비조사	지방청(사무소)
	↓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본조사 실시	지방청(사무소)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지방청(사무소)
	↓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조사표 제출	지방청(사무소)
	↓	
	조사결과 검토 및 집계	통계대행과
자료처리 및 집계·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	체육과학연구원

### 4.5 조사모집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써 포괄범위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

####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표본추출틀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조사모집단 사업체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21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 ■ 조사모집단 보완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자료에서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에 포함된 45개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89,084개 사업체 중 21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전화조사, 전년도 조사결과, 행정자료 매칭 등으로 보완한 72,921개 사업체로 수정
- 모집단 확정결과 반영 및 부적격으로 조사된 사업체수 추정하여 제외
  - (모집단확정)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확정자료인 71,571개
  - (부적격추정) 확정된 모집단 및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업종별 층별 스포츠산업 적격모집단수를 추정 후 추정된 모집단수를 이용하여 최종 가중치를 계산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 및 가중치 계산

- 중분류 업종별(  $h$  ) 종별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hat{N}_h$ )를 다음과 같이 추정

$$\hat{N}_h = \sum_{i=1}^K \left( N_{hi}^S \times \left( \frac{n_{hi}^S - I_{hi}}{n_{hi}^S} \right) \right) + n_h^C$$

$N_{hi}^S$  : 확정모집단의  $h$ 업종  $i$  층 표본층 전체 사업체 수

$i$  : 표본층 첨자 (  $i = 1, \dots, K$  )

$n_{hi}^S$  : 설계 당시  $h$ 업종  $i$  층 표본 사업체 수

$n_h^C$  : 조사 완료된  $h$ 업종 전수층 사업체 수

$I_{hi}$  :  $h$ 업종  $i$  층의 부적격 사업체 수

$\hat{N}_h$  :  $h$ 업종  $i$  층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추정 사업체 수

●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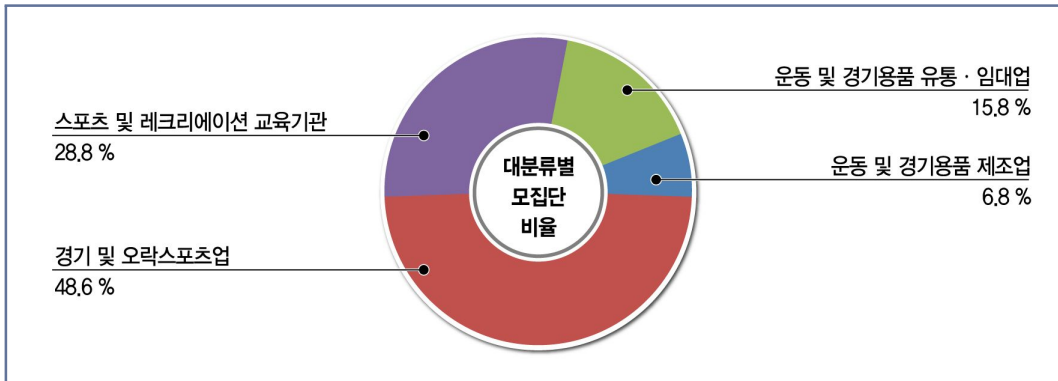
-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69,027개로 추정

〈표 1-3〉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696	6.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3,576	48.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0,864	15.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8.8
합계	69,027	100.0

# 1.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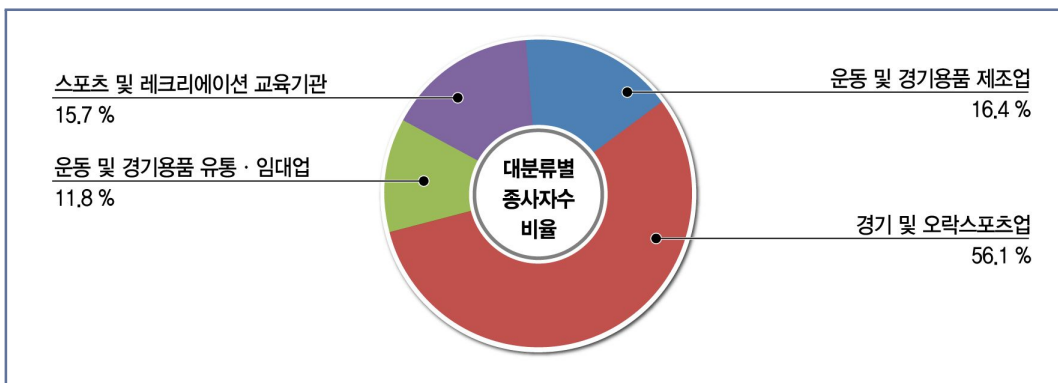


【그림 1-1】 대분류별 모집단 비율

〈표 1-4〉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단위 : 백명, %)

구분	종사자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86	16.4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5	56.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79	11.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	15.7
합계	2,360	100.0



【그림 1-2】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



## ■ 모집단의 총화

- 공표범위는 15개 중분류 업종별 주요항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표본규모를 검토
- 총화항목은 45개 세분류와 적격/적격미상의 조합을 고려한 총 60개의 1차 설계 총의 목 표오차를 주어 표본수 산정총화항목

## ■ 총화 방법

- L-H총화법
  - 모집단이 치우친 분포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응용절사법<sup>1)</sup>과 L-H총화방법<sup>2)</sup> 중 L-H총화법 선택
  - L-H총화 후 부차모집단별로 2~5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표본층은 네이만 배분법을 적용해서 표본규모 계산 및 배분

## ■ 표본추출틀 보완

- (보완대상)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 간 포괄범위가 다른 21개 중 아래 18개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21,070개 사업체 (3개는 본사조사 대상으로 별도 보완\*\*)

\* 13224, 13229, 14191, 14199, 15129, 15219, 15220, 25200, 31120, 31991, 33409, 33999, 46465, 47632, 73901, 85612, 91291, 91292

\*\* 11209, 91241, 91249

- (보완방법) 위에 언급한 산업세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체를 전화조사 및 전년조사와 교차검토, 본사조사를 통해 스포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대상외' 처리하여 보완함

## ■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69,027개로 추정
- 2010년 기준 스포츠산업실태조사에서 전체 모집단 사업체를 69,315개로 추정하였고,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69,027개 사업체로 추정함

1) 주어진 신뢰도와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표본수를 가장 작게 하는 절사점을 택한 후 특성변수의 값이 절사점보다 큰 업종은 전수조사를 하고(전수층) 절사점보다 작은 업종은 표본추출을 하여 조사하는 방법 (표본층)

2) 모집단을 표본층과 전수층으로 나누는 것은 응용절사법과 비슷하지만 주어진 층 수 및 허용오차 하에서 최적의 층경계점을 계산하고 마지막 층은 전수층으로 나머지 층들은 표본층으로 설계하는 방법

## I.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2010년 기준조사와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업체는 288개가 줄었으며 특히,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은 631개 업체가 줄어든 반면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873개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표 1-5〉 대분류별 사업체수 추정결과

(단위 : 개)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결과		
	'10년 기준 조사 추정값(A)	'11년 기준 조사 추정값(B)	(B-A)
전체	69,315	69,027	-28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813	4,696	-117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4,207	33,576	-63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9,991	10,864	87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0,304	19,891	-413

### 4.6 표본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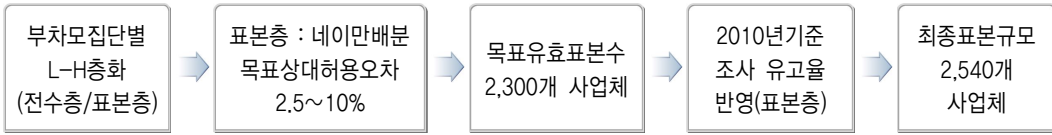
15개 중분류 업종으로 부차모집단을 고려하여 실시함

#### ■ 표본 규모

- 부차모집단별 분포에 따라 L-H층화를 적용하여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하고, 표본층에 대해서 네이만 배분의 상대허용오차는 2.5~10%로 설정하여 유효 표본규모 계산 (n=2,300)
  - 상대허용오차는 2010년 기준 조사결과 중분류별 주요항목(스포츠 종사자수, 스포츠 매출액)의 CV를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규모가 되도록 설정
- L-H층화하지 않고 전수조사만 할 산업세세분류 업종
  - 본사나 지사를 통해 조사되는 다음의 9개 산업세세분류 155개 사업체가 전수조사 대상 (11209, 25200, 91113, 91121, 91122, 91199, 91241, 91249, 73901)
- 표본층에 한하여 2010년 조사결과의 중분류별 유고비율을 적용하여 대체 없이 유효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240개의 표본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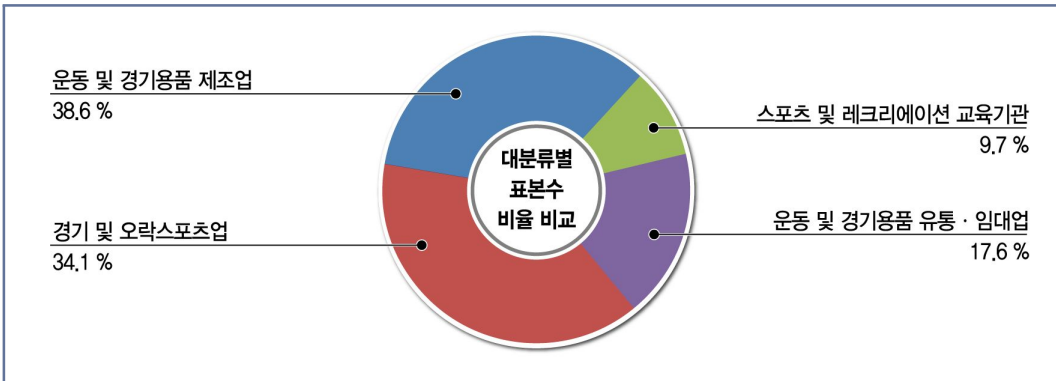
● 최종 표본규모는 2,540개 사업체



〈표 1-6〉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비교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982	38.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865	34.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447	17.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46	9.7
합계	2,540	100.0



【그림 1-3】 대분류별 모집단 및 표본 비율

#### 4.7 시장규모 추정

##### ■ 대분류별 주요항목 총계 추정 결과

- (표본설계) 4개 대분류별 증사자수 총계의 목표CV는 0.7~2.5%로 설계하였고, 조사결과 대분류별 스포츠증사자수 총계의 CV는 1.0~3.3%, 대분류별 스포츠매출액 총계의 CV는 1.7~10.3%

## 1.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추정결과) 스포츠중사자수 총계의 15개 중분류별 CV는 3.2~13.3%, 스포츠매출액 총계의 CV는 0.6~15.4%로 CV가 5% 보다 큰 일부 업종의 중분류별 공표는 유의해야 함

### ■ 모수추정

- 전체 스포츠산업 총계 추정식

$$\widehat{X} = \sum_h \widehat{X}_h$$

- 15개 세분류 업종별 총계 추정식

$$\widehat{X}_h = \widehat{X}_{hc} + \widehat{X}_{hs}$$

$$\widehat{X}_{hc} = \sum_j x_{hj}$$

$$\widehat{X}_{hs} = \sum_i \sum_j w_{hi} \cdot x_{hij} \quad \text{단, } w_{hi} = \frac{N_{hi}}{n_{hi}}$$

첨자	$h$	: 업종
	$c$	: 전수층
	$s$	: 표본층
	$i$	: 표본층 내의 L-H층
	$j$	: 조사된 기업체
변수	$n$	: 표본수
	$N$	: 모집단수
	$\widehat{X}$	: 특성치 총계
	$x$	: 조사된 기업체의 특성치

### ■ 분산추정

- 전체 스포츠산업 분산 추정식

$$Var(\widehat{X}) = \sum_h Var(\widehat{X}_h)$$

- 각 업종의 시·도별 분산 추정식

$$Var(\widehat{X}_h) = Var(\widehat{X}_{hs}) = \sum_i Var(\widehat{X}_{hi}) = \sum_i \frac{N_{hi}(N_{hi} - n_{hi})}{n_{hi}} s_{hi}^2$$

$$\text{단, } s_{hi}^2 = \frac{1}{n_{hi} - 1} \left( \sum_j x_{hij}^2 - \frac{(\sum_j x_{hij})^2}{n_{hi}} \right)$$



- 각 업종의 시·도별 분산 추정식

$$Var(\widehat{X}_{hi}) = Var(\widehat{X}_{hs}) = \sum_i Var(\widehat{X}_{hi}) = \sum_i \frac{N_{hi}(N_{hi} - n_{hi})}{n_{hi}} s_{hi}^2$$

$$\text{단, } s_{hi}^2 = \frac{1}{n_{hi} - 1} \left( \sum_j x_{hij}^2 - \frac{(\sum_j x_{hij})^2}{n_{hi}} \right)$$

-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 $SE(\widehat{X}) = \sqrt{V(\widehat{X})}$
- $\widehat{CV} = \frac{SE(\widehat{X})}{\widehat{X}} \times 100$

## 4.8 조사의 한계 및 유용성

### ■ 조사의 한계

- 표본설계의 특성변수는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관심 항목인 스포츠산업 종사자수,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사업체가 응답한 스포츠산업 비중을 이용해 역계산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변동이 반영되어 설계상의 기준 CV에 비해 관심항목의 CV가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
-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사업체가 산재되고 표본대체가 많아 조사원의 현장조사에 시간 및 경비가 많이 소요됨
- 현 특수분류(스포츠산업)의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분류내에 산업분류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사항에 한계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회전목마 제조업,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은 포함되나 유원지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기원 운영업 등이 제외되며, 복권발행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은 특성항목인 연간 이용인원 수를 조사할 수 없음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조사 시 어려움이 있음
  - 스포츠의류, 경기용 신발, 스포츠용 자전거, 흥행장용품 등의 기준, 골프용, 기타 운동용 가방, 스포츠오락용 기계, 바둑 및 장기 등의 포함 여부 등 구분이 곤란

## I. 2011년 기준 조사 개요

- 스포츠산업분류의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세세분류는 스포츠산업 세분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조사기준과 기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사업실적으로 조사
  -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스포츠포토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창원시,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사업자로 기업회계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사업실적임
- 2011년 기준조사에의 조직형태별 자료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참고사항으로만 활용 가능
  - 표본설계 시 조직형태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지 않음
  - 표본추출 과다 혹은 과소에 따라 조사결과에 변동이 있어 추정된 값의 정확성이 떨어짐
  - 비법인단체의 경우 모집단에 비해 표본수가 적게 추출
  - 조사과정에서 표본대체를 함에 있어 스포츠산업 중분류를 감안하여 표본대체하고 조직형태별은 고려하지 않음
  - 조사과정에서 조직형태가 변경됨(비법인단체 ↔ 회사이외법인, 국가·지자체)

### ■ 2011년 기준조사의 유용성

- 스포츠산업관련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유지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모집단 보완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잠정)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45개 산업세세분류 중 21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사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 간 포괄범위가 다른 21개 중 아래 18개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21,070개 사업체 (3개는 본사조사 대상으로 별도 보완\*\*)
- \* 13224, 13229, 14191, 14199, 15129, 15219, 15220, 25200, 31120, 31991, 33409, 33999, 46465, 47632, 73901, 85612, 91291, 91292
- \*\* 11209, 91241, 91249





###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청(사무소)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수행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스포츠음료 제조업,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스포츠인 매니저업(73901)은 모집단에서 대상 사업체가 극히 적어 현장조사를 완료한 이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수 확보

###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QR코드 삽입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2010년 기준조사와는 달리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 Ⅱ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 Ⅱ .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 1. 사업체 수

#### 1.1 모집단 사업체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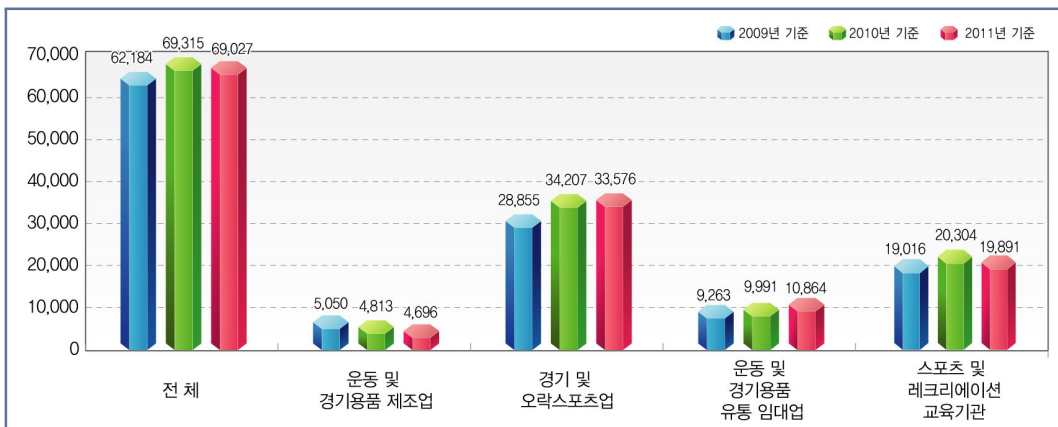
- 본 조사는 2011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추출한 모집단 총 69,027개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2009년 기준조사 62,184개보다 700여개 증가하였으며 2010년 기준조사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사업체 수는 증가하는 반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감소 추세에 있음

〈표 II-1〉 09~11년도 기준 모집단수 비교

(단위 : 개)

	모집단 사업체수		
	2009년 기준	2010년 기준	2011년 기준
전 체	62,184	69,315	69,027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050	4,813	4,69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8,855	34,207	33,57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9,263	9,991	10,86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016	20,304	19,891

(단위 : 개)



【그림 II-1】 09~11년 기준 모집단수 비교

## II.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표 II-2〉 15개 공표단위(중분류) 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 %)

대분류	중분류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3	0.0
	섬유제품 및 의복제조업	2,898	4.2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56	1.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839	1.2
소 계		4,696	6.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193	0.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41	0.6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3	0.5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1,350	45.4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1,169	1.7
	캠블링 및 베틱업	52	0.1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8	0.0
소 계		33,576	48.6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260	1.9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8,688	12.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916	1.3
소 계		10,864	15.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8.8
소 계		19,891	28.8
합계		69,027	100.0

### 1.2 설립년도

■ 스포츠산업 사업체의 설립년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5년 이하의 사업체가 전체 63.6%로 2010년 기준조사 59.9%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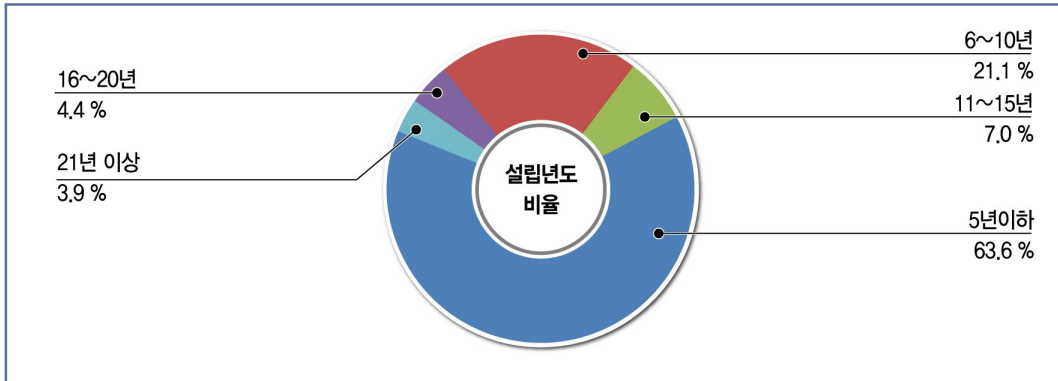
- 이는 10년 이하의 사업체 비율이 84.7%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이 신생산업으로써 성장잠재력은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1~15년 중장기 사업지속업체의 비율이 2010년 기준조사에 비해 1.9%, 21년 이상 업체가 0.3% 감소하여 중견업체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II-3〉 설립년도 비율

(단위 : 천개, %)

구분	5년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사업체 수	43.9	14.5	4.8	3.0	2.7
비중	63.6	21.1	7.0	4.4	3.9



【그림 II-2】 설립년도 비율

## II.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 1.3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표 II-4〉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구 분	대분류	사업체수	비중
1~4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450	3.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912	43.3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0,040	14.5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441	28.2
소 계		61,843	89.6
5~9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306	1.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940	2.8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618	0.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68	0.5
소 계		4,232	6.1
10~19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35	0.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771	1.1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150	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77	0.1
소 계		1,533	2.2
20~49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20	0.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623	0.9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업	34	0.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	0.0
소 계		981	1.5
50명이상	운동·경기용품 제조업	84	0.1
	경기·오락스포츠업	331	0.5
	운동·경기용품·유통업	22	0.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	0.0
소 계		438	0.6
합 계		69,0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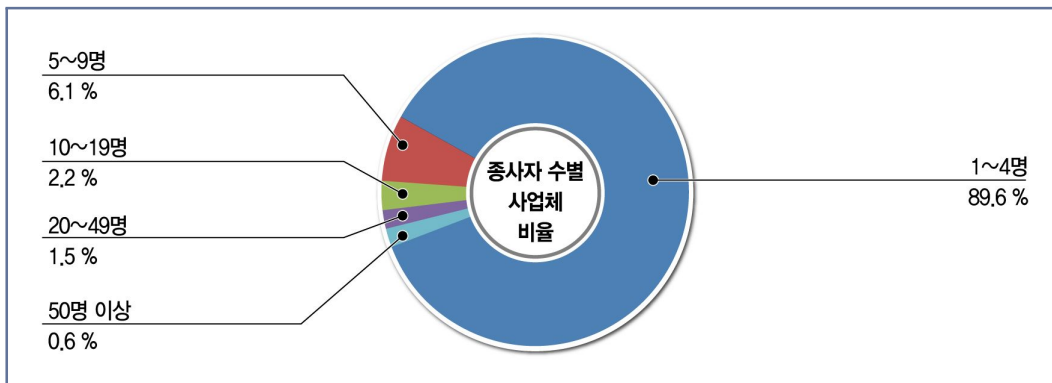


- 종사자 수가 1~4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 중 8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으로 5~9인 사업체가 6.1%로 10인 미만 사업체가 95.7%를 차지하고 있음
- 20인 이상 사업체는 단 2.1%에 불과해 대부분의 스포츠산업체가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5〉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1~4명	61,843	89.6
5~9명	4,232	6.1
10~19명	1,533	2.2
20~49명	981	1.5
50명 이상	438	0.6
합 계	69,027	100.0



【그림 II-3】 종사자 수별 사업체 비율

### 1.4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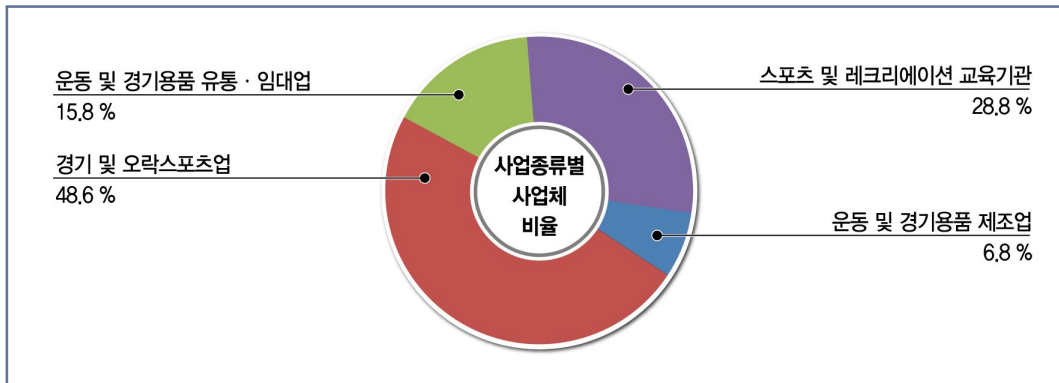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인 경기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갠블링 및 베틱업 등의 사업체가 전체의 48.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28.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이 15.7%를 점유하고 있음
- 특히 기타스포츠 시설운영업(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시설 등)이 전체 스포츠산업체 중 45.4%를 차지하고 있음

## II. 스포츠산업체 일반 현황

〈표 II-6〉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4,696	6.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3,576	48.6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0,864	15.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19,891	28.8
합 계	69,027	100



【그림 II-4】 사업종류별 사업체 비율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1.1 2011년 기준조사 스포츠산업 요약

-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요약하면 스포츠산업 사업체수를 추정하면 6만 9,027개,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6조 513십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출액 중 내수가 35조 234십억원, 수출이 1조 279십억원으로 각각 조사됨
  -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대비 288개 줄어든 6만 9,027개로 추정되었음
-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3만 6천명으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교육서비스업의 종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1년 기준조사에서는 종사자 수가 2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6조 513십억원이며, 영업비용은 33조 195십억원, 영업이익도 2조 958십억원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조사에 비해 수출은 약 576십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 역시 약 1조원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Ⅲ-1〉 09~11년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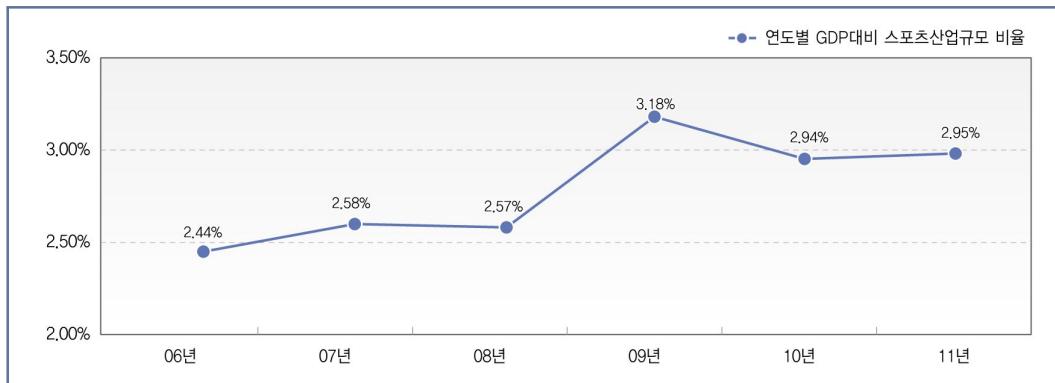
구 분	업체수 (개)	종사자 (천명)	매출액 (십억원)	내수 (십억원)	수출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2011년 기준	69,027	236	36,513	35,234	1,279	2,958
2010년 기준	69,315	234	34,482	32,627	1,855	3,930
2009년 기준	62,184	210	33,456	32,575	874	4,994

- 국가 GDP 대비 스포츠산업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2.44%에서 2011년 2.95%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2011년 스포츠산업규모 성장률이 6.5%로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표 III-2〉 연도별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GDP(원)	915조 9천억	901조 2천억	1,023조 9천억	1,050조	1,172조	1,237조
스포츠산업규모 (원)	22조 364십억	23조 270십억	26조 361십억	33조 456십억	34조 482십억	36조 513십억
GDP대비 스포츠 산업비율	2.44%	2.58%	2.57%	3.18%	2.94%	2.95%
증가율(%)	13.8%	4.1%	13.3%	26.9%	2.4%	6.5%



【그림 III-1】 연도별 GDP대비 스포츠산업규모 비율

## 1.2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 산업별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가가치 유발계수<sup>3)</sup>를 보면 2009년의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87<sup>4)</sup>로 2008년(0.666)에 비해 소폭 상승함

3)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해당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며,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A<sup>p</sup>(I-Ad)<sup>-1</sup>)는 각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4)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687이라는 것은 소비,투자,수출 등 국산품 최종수요가 1,000원 발생하였을 때 687원은 국내 부가가치로 창출되고 나머지 313원은 중간재 수입 등에 사용되어 해외로 유출됨을 의미함



-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상승한 것은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수입 중간투입률(17%→15.4%)이 하락하면서 부가가치율(36.8%→37.8%)이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함

#### ■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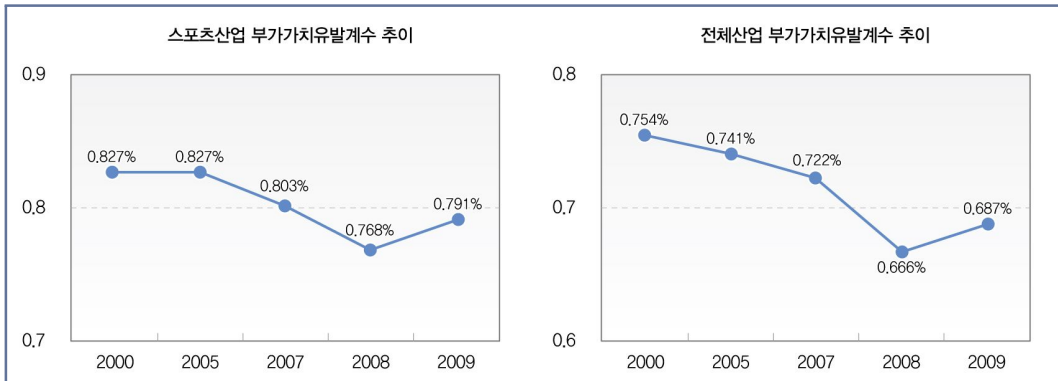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이후 차츰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2009년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단, 스포츠산업(0.791) 전반적으로 전체산업(0.687)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643으로 2008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0.904 로서 2008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유발계수역시 0.851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스포츠산업 전체가 국내 전체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고 분류별 비교 역시 스포츠산업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표 III-3〉 스포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추이

대분류	중분류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0.839	0.755	0.738	0.690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0.688	0.746	0.734	0.701	0.749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621	0.641	0.584	0.529	0.65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0.724	0.659	0.551	0.493	0.514
<b>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b>		<b>0.718</b>	<b>0.700</b>	<b>0.652</b>	<b>0.603</b>	<b>0.643</b>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0.883	0.908	0.905	0.874	-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0.916	0.921	0.914	0.886	0.89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0.918	0.937	0.934	0.913	0.915
	캠블링 및 베틱업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b>경기 및 오락스포츠업</b>		<b>0.906</b>	<b>0.922</b>	<b>0.918</b>	<b>0.891</b>	<b>0.904</b>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0.889	0.893	0.887	0.864	0.865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0.931	0.920	0.911	0.888	0.8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	-	-	-
<b>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b>		<b>0.91</b>	<b>0.907</b>	<b>0.899</b>	<b>0.876</b>	<b>0.593</b>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0.862	0.893	0.877	0.845	0.851
<b>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b>		<b>0.862</b>	<b>0.893</b>	<b>0.877</b>	<b>0.845</b>	<b>0.851</b>
<b>스포츠산업(평균)</b>		<b>0.827</b>	<b>0.827</b>	<b>0.803</b>	<b>0.768</b>	<b>0.791</b>
<b>전제산업(평균)</b>		<b>0.754</b>	<b>0.741</b>	<b>0.722</b>	<b>0.666</b>	<b>0.687</b>





【그림 III-2】 부가유발계수 추이

### 1.3 스포츠산업 노동유발계수

■ 노동유발계수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 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써 산출액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함

- 노동유발계수는 노동량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취업유발계수<sup>5)</sup>와 고용유발계수<sup>6)</sup>로 구분함
- 어떤 산업의 노동계수가 크면 클수록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크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하고, 생산을 위하여 설비자동화 등 투자가 늘어나면 산출량 단위당 필요한 노동량이 작아지므로 어떤 산업의 노동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노동절약적 산업 즉,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함
- 통상 노동유발계수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하락추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력감축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노동 계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취업계수  $L_w = L_w / X$ 이고, 고용계수  $l_e = L_e / X$ 임. 여기서  $L_w$ 는 취업자 수,  $l_e$ 는 피용자 수, X는 산출액을 나타냄
- 2000년~2009년 운동경기용품 임대업(운동경기용품 도매업, 운동경기 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스포츠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산업의 생산 단위당 노동량이 크기 때문임

5)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는 취업유발계수

6)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하는 노동계수는 고용유발계수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즉, 이들 산업은 운동경기용품 제조업이나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산업은 다른 유형의 스포츠산업에 비하여 자동화·기계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실제로 운동 및 경기용품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은 다른 유형의 스포츠산업에 비하여 노동을 더 필요로 하는 산업임
  - 예를 들어, 2009년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가운데 스포츠관련 직물제의류의 취업유발계수가 7.6이라는 의미는 직물제의류 한 단위(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가 7.6명이라는 의미임

#### ■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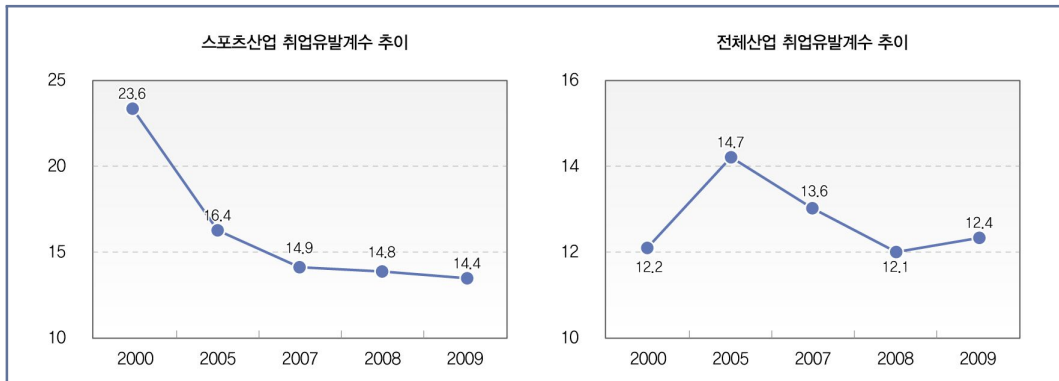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산업연관표상의 통합소분류(168부문)의 계수를 이용하여 구분하였고 기본부문(403부문)내의 산업별계수가 통합소분류(168부문)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임
- 통산 산업연관표에서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기본부문(403부문)의 하위부문(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취업계수나 고용계수는 통합소분류(168부문)까지만 구할 수 있음
- 즉, 산업연관표상의 부문분류는 통합대분류(28부문), 통합중분류(78부문), 통합소분류(168부문), 기본부문(403부문), 부문별품목별 공급액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포츠산업은 기본부문(403부문)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나, 스포츠산업의 취업 및 고용계수는 통합소분류(168부문)를 이용하여 구함
- 고용유발계수는 현재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제대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임
- 고용유발계수는 노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과 생산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변동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함
- 고용유발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산업별 노동량을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취업계수( $I_i = L_i / X_i$ ,  $X_i$ 는  $i$ 산업의부문의 취업계수,  $L_i$ 는  $i$ 산업부문의 노동투입량,  $X_i$ 는  $i$ 산업부문의 총산출액)를 계산하여야 함
- 그러나  $i$ 산업의 노동투입량(명), 즉 스포츠산업부문의 노동투입량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09년도 기준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14.4)는 전체산업 평균(12.4)보다 높음

〈표 III-4〉 2000~2009년 스포츠산업의 취업유발계수

대분류	중분류	2000	2005	2007	2008	200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직물제의류	5.9	11.3	4.9	8.4	7.6
	직물제품	8.4	8.5	8.2	7.4	7.0
	운동화 및 기타 신발	16.0	10.1	9.3	11.2	10.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12.5	13.1	12.4	11.8	11.4
	기타 오락서비스	21.9	13.1	12.4	11.8	11.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1.3	25.4	24.6	23.7	23.4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41.3	25.4	24.6	23.7	23.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사회단체	41.3	24.3	23.3	20.6	20.6
스포츠산업(평균)		23.6	16.4	14.9	14.8	14.4
전체산업(평균)		12.2	14.7	13.6	12.1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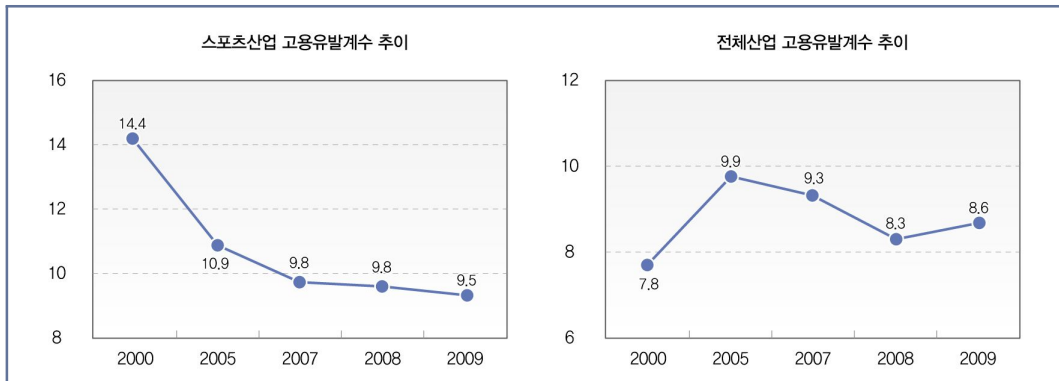
【그림 III-3】 취업유발계수 추이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2009년도 기준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9.5)는 전체산업 평균(8.6)보다 높음

〈표 III-5〉 2000~2009년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대분류	중분류	2000	2005	2007	2008	2009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직물제의류	5.0	9.2	4.3	6.8	6.2
	직물제품	6.6	6.3	6.0	5.5	5.2
	운동화 및 기타 신발	14.6	8.9	8.1	9.9	8.9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운동 및 경기관련 서비스	11.3	7.6	7.0	6.7	6.5
	기타 오락서비스	10.9	7.6	7.0	6.7	6.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16.8	11.6	11.5	11.2	11.0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6.8	11.6	11.5	11.2	1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사회단체	33.0	24.3	23.3	20.5	20.6
스포츠산업(평균)		14.4	10.9	9.8	9.8	9.5
전체산업(평균)		7.8	9.9	9.3	8.3	8.6



【그림 III-4】 고용유발계수 추이



## 2. 매출액

### 2.1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

■ 사업종류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매출이 전체 60.1%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운동 및 경기용품유통·임대업이 19.2%,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이 18.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이 2.5%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업종류별 매출액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동 업종에 경륜, 경정, 경마 및 스포츠 복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보다 약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6〉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대분류	중분류	매출액	비중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552(3.9)	0.7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40,050(60.1)	11.0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603(14.4)	2.6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403(21.6)	3.9
소 계		66,608(100)	(18.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38,043(17.3)	10.4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4,913(6.8)	4.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667(16.3)	9.8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09(15.3)	9.1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51(0.3)	0.2
	갬블링 및 베팅업	96,300(43.9)	26.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0.1)	0.1
소 계		219,274(100)	(6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2,591(60.8)	11.7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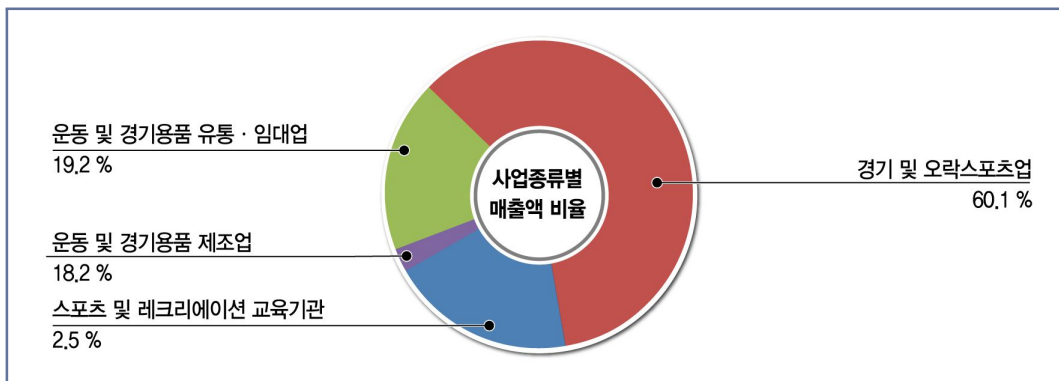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매출액	비중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6,781(38.3)	7.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607(0.9)	0.2
소 계		69,979(100)	(19.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66(100.0)	2.5
소 계		9,266(100.0)	(2.5)
총합계		365,127	100.0

■ 매출액 비중의 변화는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이 2010년에 비해 10.7%의 증가하였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0.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3.4% 소폭 증가하였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7〉 사업종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10년도	2011년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018(17.4)	6,661(18.2)	10.7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211(61.5)	21,927(60.1)	3.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6,328(18.4)	6,998(19.2)	10.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2.7)	927(2.5)	0
합 계	34,482(100)	36,513(100)	6.0



【그림 III-5】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율(2011년)



## 2.2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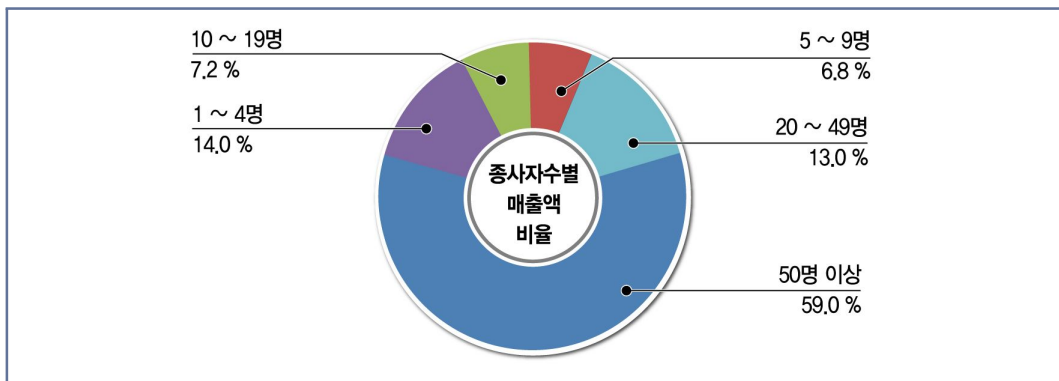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체 매출액이 전체의 59.0%를 차지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산업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종사자 규모가 1~4인 사업체수가 89.6%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14.0%에 그치고 있어 소규모 업체의 유고발생, 지속적 성장의 한계 등 전년도와 비슷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지속적 성장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I-8〉 종사자수별 매출액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비중)		증감률
	2010년	2011년	
1~4명	5,101(14.8)	5,071(14.0)	-0.6
5~9명	2,217(6.4)	2,468(6.8)	11.3
10~19명	2,118(6.1)	2,592(7.2)	22.4
20~49명	4,993(14.5)	4,690(13.0)	-6.1
50명 이상	20,053(58.2)	21,692(59.0)	8.2
합 계	34,482(100)	36,513(100)	6.0



【그림 III-6】 종사자수별 매출액 비율(2011년)

### 3. 종사자수

#### 3.1 사업종류별 종사자 현황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의 비율이 6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은 구멍자켓, 구멍벨트, 스포츠의류 제조 및 부분품으로 의류 제조 및 부분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경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종사자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 66.3%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의 종사자 비율이 63.3%로 가장 높게 조사됨

〈표 III-9〉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수

(단위 : 백명, %)

대분류	중분류	종사자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9(2.3)	0.4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232(60.4)	9.8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2(18.8)	3.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71(18.5)	3.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84(100)	16.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경기장 운영업	71(5.4)	3.0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42(3.2)	1.8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6(17.8)	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881(66.3)	37.3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34(2.6)	1.4
	캠블링 및 베팅업	61(4.6)	2.6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1)	0.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6(100)	56.1





대분류	중분류	종사자수	비율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76(27.1)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177(63.3)	7.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27(9.6)	1.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80(100)	11.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100.0)	15.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0(100.0)	15.7
총합계		2,360	100.0

■ 전체 스포츠산업 종사자수는 23만 6천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산업 종사자 60만 4,730명(2011년 기준)에 약 절반에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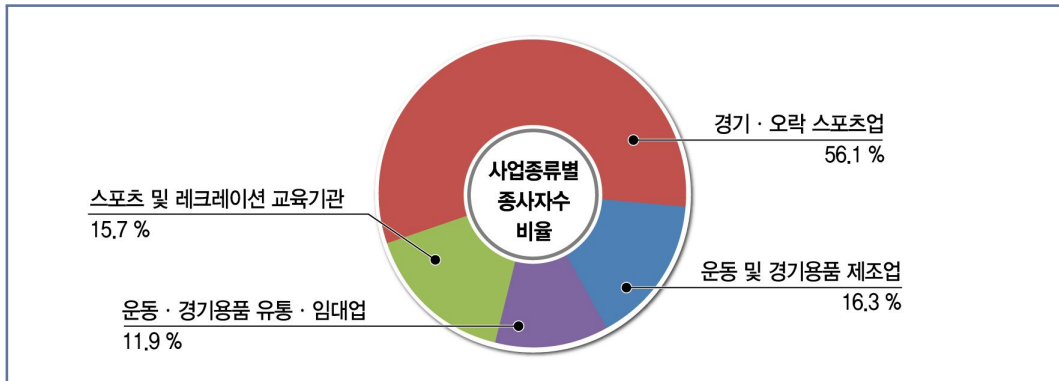
- 사업종류별 종사자수는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이 13만 3천명, 5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사업에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10.6% 성장한 것과 달리 종사자는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표 Ⅲ-10〉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수 (비중)		증감률
	2010년도	2011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6 (15.4)	38(16.3)	5.5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32 (56.4)	133(56.1)	0.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29 (12.4)	28(11.9)	-3.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37 (15.8)	37(15.7)	0
합 계	234 (100.0)	236(100)	0.8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그림 III-7〉 사업종류별 종사자수 비율(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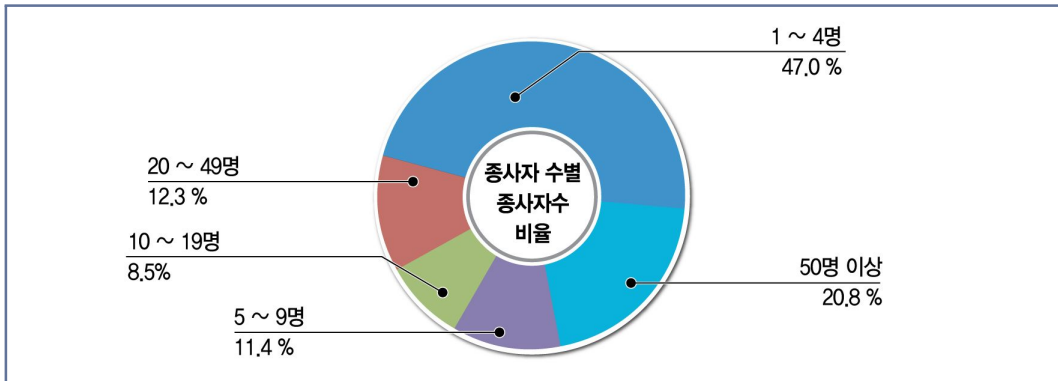
### 3.2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1~4인 사업체수에 종사하는 인원이 11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50명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4만 9천명, 2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11〉 종사자 수별 종사자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 (비중)		증감률
	2010년도	2011년도	
1~4명	109 (46.6)	111(47.0)	1.8
5~9명	27 (11.5)	27(11.4)	0
10~19명	21 (9.0)	20(8.5)	-4.8
20~49명	28 (12.0)	29(12.3)	3.6
50명 이상	49 (20.9)	49(20.8)	0
합 계	234 (100.0)	236(100)	0.8



【그림 III-8】 종사자 수별 종사자수 비율(2011년)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4. 사업실적

##### 4.1 스포츠산업 전체 실적

■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6조 513십억원으로 영업비용 33조 195십억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조 958십억원으로 8.1%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6.4%로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음
- 수출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 투자 등과 동시에 프로스포츠 및 생활스포츠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체 스포츠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표 III-12〉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및 비중

(단위 : 십억원, %)

대분류	중분류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53	0.7	236	0.7	20	0.7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3,698	10.5	3,635	11.0	370	12.5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46	2.1	907	2.7	53	1.8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919	2.6	1,349	4.0	91	3.1
소 계		5,616	15.9	6,127	18.4	534	18.1
2	경기장 운영업	3,804	10.8	3,672	11.1	133	4.5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1,486	4.2	1,107	3.3	23	0.8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3,567	10.2	3,413	10.3	154	5.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331	9.5	2,923	8.8	408	13.7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5	0.2	61	0.2	14	0.5
	갬블링 및 베팅업	9,630	27.3	8,967	27.0	663	22.4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	0.1	27	0.1	2	0.1
소 계		21,922	62.3	20,170	60.8	1,397	47.2
3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4,030	11.4	3,821	11.5	438	14.8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2,678	7.6	2,376	7.2	302	10.2



대분류	중분류	내수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임대업	61	0.2	49	0.1	12	0.4
	소 계	6,769	19.2	6,246	18.8	752	25.4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2.6	652	2.0	275	9.3
	소 계	927	2.6	652	2.0	275	9.3
	총합계	35,234	100.0	33,195	100.0	2,958	100.0

1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3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4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스포츠산업 사업실적은 2010년 대비 매출액 규모는 6.0% 증가하였고, 특히 수출은 31.1% 감소하였음

●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대비 24.7%의 감소가 나타나 기업들의 고용확대와 투자 등이 위축될 것으로 사료됨

〈표 III-13〉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A)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A)/(B)
		내수	수출			
2010년도	34,482	32,627	1,855	29,637	3,930	11.4
2011년도	36,513	35,234	1,279	33,195	2,958	8.1
전년대비 증감률	6.0	8.0	-31.1	12.0	-24.7	-28.9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그림 Ⅲ-9】 스포츠산업 사업실적 비율(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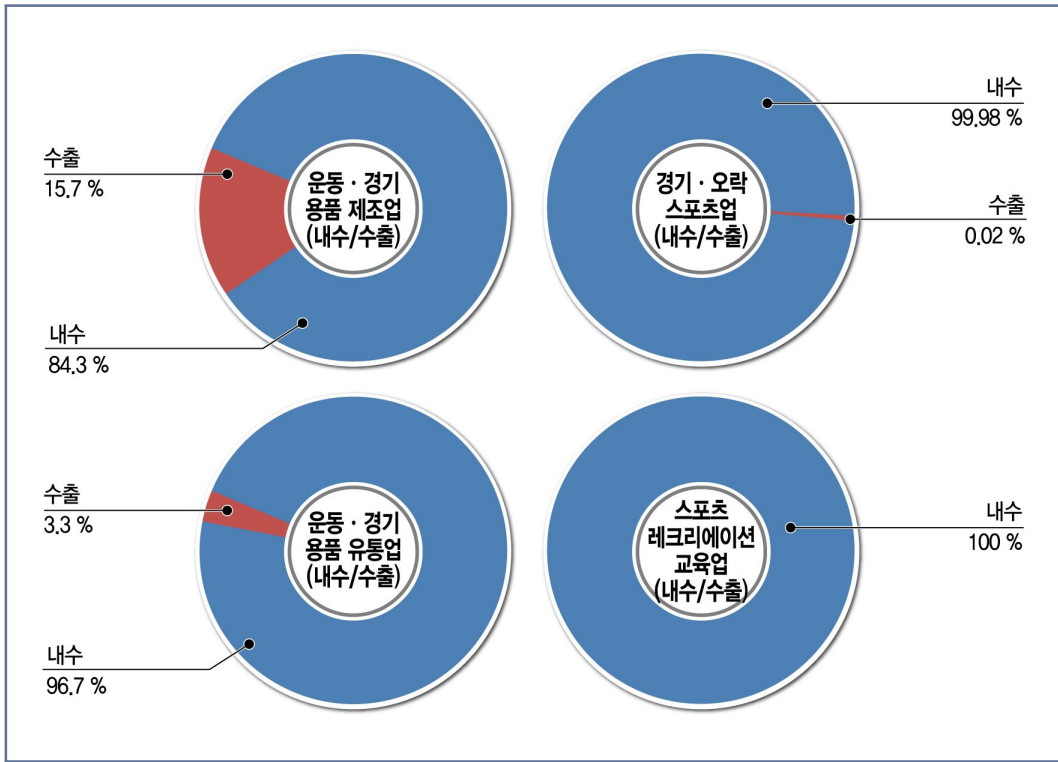
#### 4.2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 중 내수비율은 96.5%에 이르며 특히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경우 2010년과 동일하게 10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15.7%의 수출비중은 국내 전체 제조업 수출비중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지원과 관심을 통해 지속적 증가율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Ⅲ-14〉 사업종류별 내수·수출실적

(단위 : 십억원)

구 분	매출액 (A)		내수		수출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018	6,661	4,780	5,616	1,238	1,045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211	21,927	21,209	21,922	2	5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6,328	6,998	5,713	6,769	615	229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5	927	925	927	-	-



【그림 III-10】 사업종류별 내수/수출 실적 비율(2011년)

### 4.3 사업종류별 영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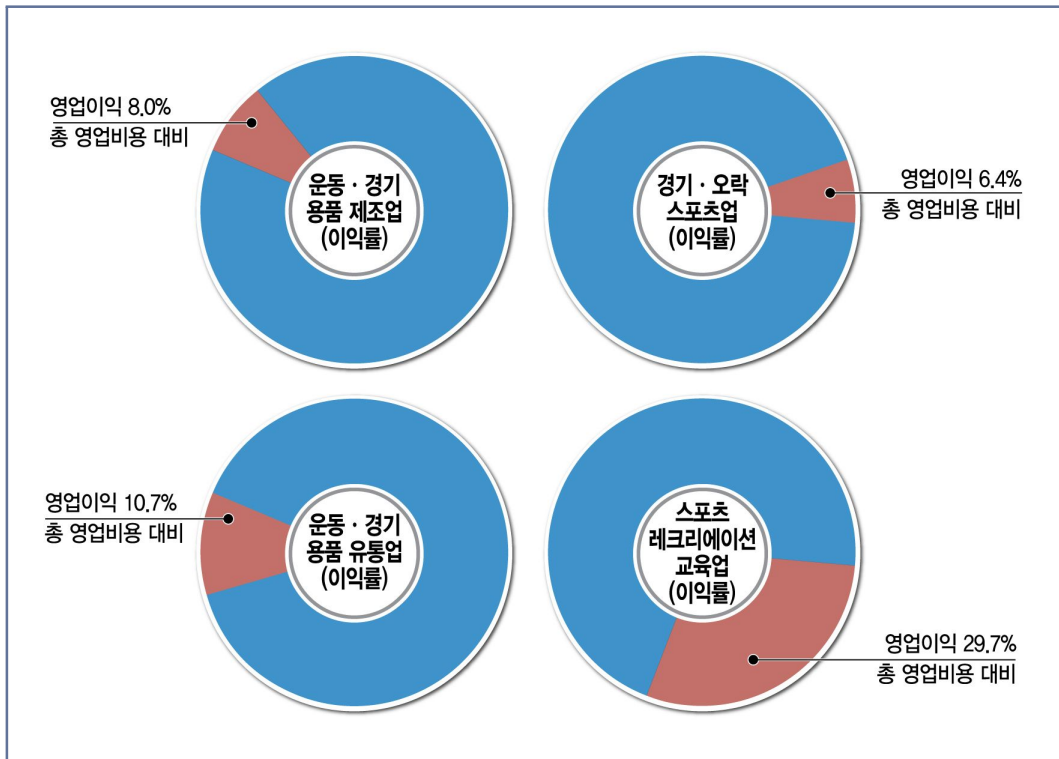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의 사업종류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전체매출 36조 513십억원 중 영업이익은 2조 958십억원으로 8.1%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음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매출액 중 영업이익률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이 8.0%로 조사됨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영업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 제조업에 비해 수출 경쟁력도 떨어져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브랜드, 품질 등 현안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시급함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표 III-15〉 사업종류별 영업이익률(2011년)

(단위 : 십억원, %)

구 분	매출액 (A)	영업비용	영업이익 (B)	이익률 (B)/(A)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661	6,127	534	8.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1,927	20,170	1,397	6.4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6,998	6,246	752	10.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927	652	275	29.7



【그림 III-11】 사업종류별 영업 이익률(2011년)





## 5.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 5.1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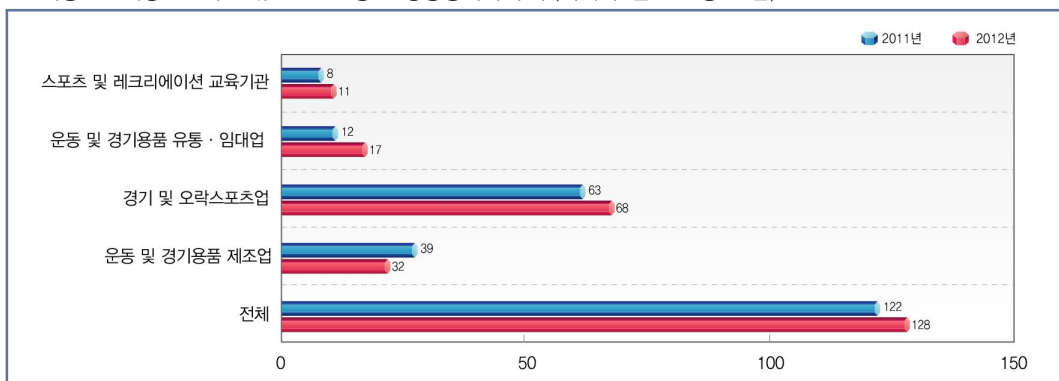
-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현황은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2011년도에 1만 22백여명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는 4.9% 늘어난 1만 28백여명을 충원한 것으로 조사됨
-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은 소폭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영역은 전반적으로 인력충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6〉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단위 : 백명)

구 분		인력충원*	
		2011년	2012년
합 계		122	128
사업종류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9	3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63	68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12	17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	11

\*인력충원 : 해당년도에 신규 또는 보충된 상용종사자의 수(퇴직자 결원 보충 포함)



【그림 III-12】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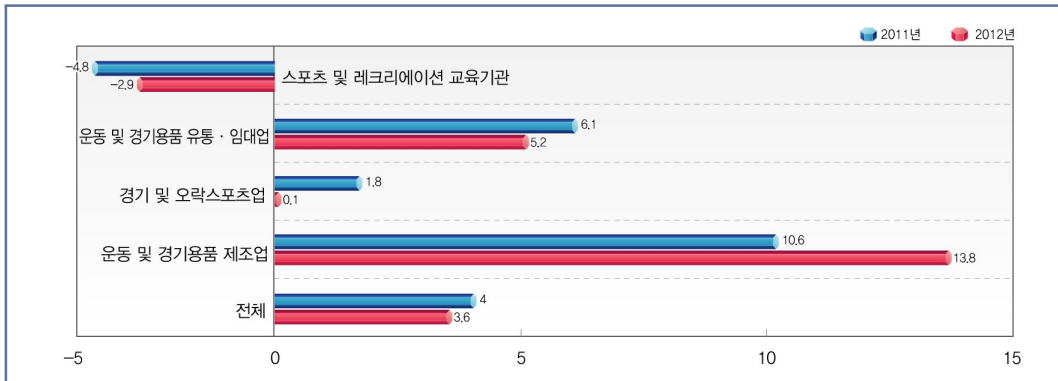
#### 5.2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사업종류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에 4.0% 증가하였고, 2012년 3.6%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분야인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경우 2011년에 10.6%에 이어 2012년도에 13.8%의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경기상황의 호전을 낙관하고 있음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역시 2012년도에 0.1% 소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에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업계의 저성장 현상을 탈피하고 스포츠산업 전반에 성장을 촉진해 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은 스포츠산업에서 매출, 종사자 등 중추적 산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도 수반돼야 함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경기전망이 밝고 2012년 기준 매출액 등의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반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업의 경우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 역시 경기침체를 전망했지만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Ⅲ-17〉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단위 : %)

구 분		사업체 경기전망	
		2011년	2012년
합 계		4.0	3.6
사업종류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0.6	13.8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8	0.1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6.1	5.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8	-2.9



【그림 III-13】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6. 특성항목

### 6.1 운동 및 경기용품 내수 및 수입액 현황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의 내수판매 매출은 5조 616십억원으로 비중이 84.3%를 차지하여 여전히 내수판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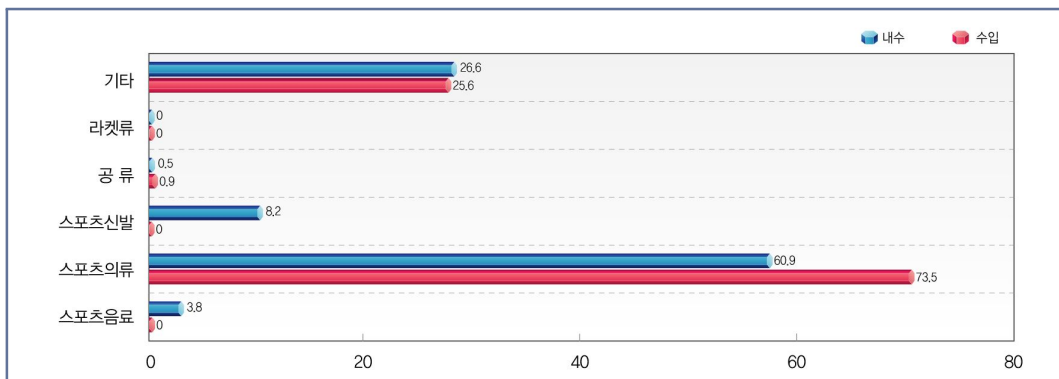
- 각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6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기준조사에서도 스포츠의류 내수(매출) 비중이 57.8%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기타의 경우 내수비중이 26.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25.6%로 나타남. 이는 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표 III-18〉 운동·경기용품 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 분	금액	비 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운동·경기 용품 제조업	내수	5,616	3.8	60.9	8.2	0.5	0.0	26.6
	수입	114	-	73.5	0.0	0.9	-	25.6

(단위 : %)



【그림 III-14】 운동·경기용품 제조업 상품별 구성비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의 내수판매 매출은 6조 769십억으로 비중이 96.0%를 차지하여 운동·경기용품 제조업과 같이 내수판매 위주의 산업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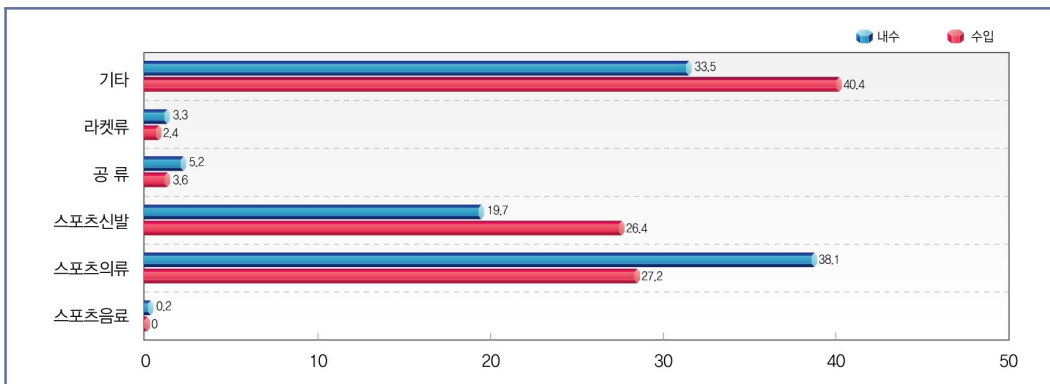
- 스포츠의류의 내수(매출) 비중이 역시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도 33.5%로 높게 나타남
-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품목(스키, 골프, 낚시, 캠핑용 장비, 자전거 등)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은 스포츠의류 및 신발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 스포츠의류 및 신발(등산, 골프의류 등)을 남녀노소가 구분하지 않고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임

〈표 III-19〉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임대업 상품별 구성비

(단위 : 십억원, %)

구 분	금액	비 중						
		스포츠음료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공 류	라켓류	기타	
운동 및 경기 용품 유통·임대업	내수	6,769	0.2	38.1	19.7	5.2	3.3	33.5
	수입	1,103	-	27.2	26.4	3.6	2.4	40.4

(단위 : %)



【그림 III-15】 운동 및 경기 용품유통·임대업 상품별 구성비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6.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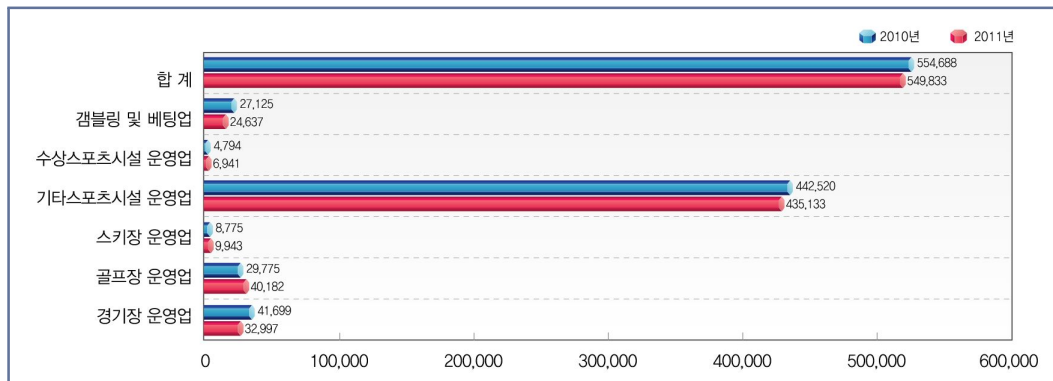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의 평균 영업 개월 수는 연간 11개월로 나타났으며, 연간 이용인원 수는 5억 4,983만명으로 조사됨

- 연간이용 인원수는 전년대비 0.8% 감소하여 경제상황과 맞물려 스포츠 참여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수상스포츠의 시설인프라 확장, 접근성 확보 등에 따른 수상스포츠 이용인원 역시 전년대비 44.8% 증가하였음

〈표 III-20〉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구 분	평균 영업개월수(월)		연간이용인원수(천명,%)		증감률(%)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합 계	10	11	554,688(100.0)	549,833(100)	-0.8
경기장 운영업	12	12	41,699(7.5)	32,997(6.0)	-20.9
골프장 운영업	11	11	29,775(5.4)	40,182(7.3)	34.9
스키장 운영업	4	6	8,775(1.6)	9,943(1.8)	13.3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11	11	442,520(80)	435,133(79.1)	-1.7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7	8	4,794(0.9)	6,941(1.3)	44.8
게임 및 베팅업	12	12	27,125(4.9)	24,637(4.5)	-9.2

(단위 : 명)



【그림 III-16】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연간 이용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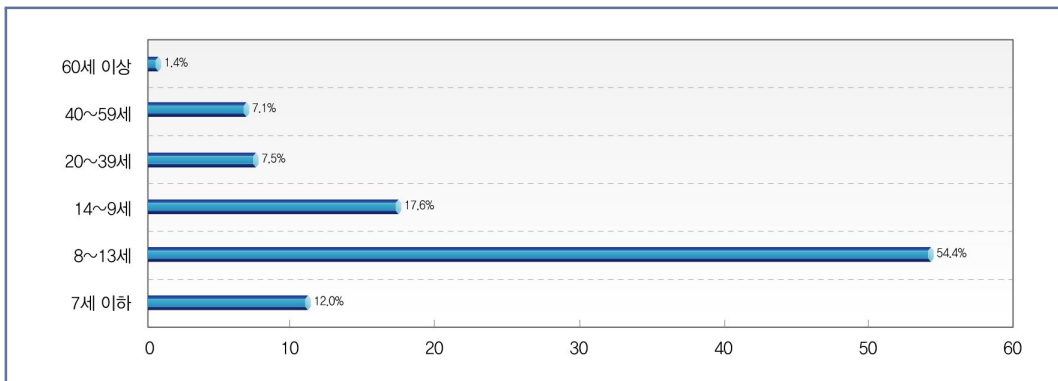
### 6.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고객유형별 매출액 구성비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의 경우 8~13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매출이 전체 54.4%를 차지함

- 태권도, 수영 등 유아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그 외 연령대 매출은 1.4% ~17.6% 사이로 조사됨
- 이는 스포츠산업 교육서비스업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등이 부족하여 8~13세 연령대에 매출이 집중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교육서비스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므로 각 연령대별 잠재수요를 확대할 필요성

〈표 III-21〉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고객유형	7세 이하	8~13세	14~9세	20~39세	40~59세	60세 이상
100.0%	12.0%	54.4%	17.6%	7.5%	7.1%	1.4%



【그림 III-17】 고객유형별 매출액 비중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7.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조사 결과

### 7.1 전체 스포츠산업 현안 실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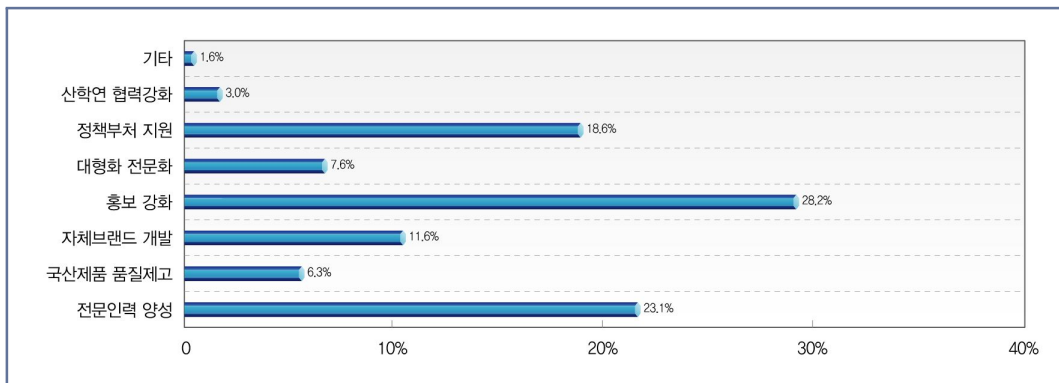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육성·발전 장애요인, 육성·발전 지원 부문, 매출증대 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함

- 대외경쟁력 강화부문의 경우 최근 3년간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전문인력 양성”, “정책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남

〈표 Ⅲ-22〉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단위 : %)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전문인력 양성	국산제품 품질제고	자체브랜드 드개발	홍보 강화	대형화 전문화	정책부처 지원	산학연 협력강화	기타
2009년	23.2	10.3	21.2	17.9	11.2	14.5	0.7	0.9
2010년	18.1	6.2	8.7	35.3	5.2	21.2	2.4	2.9
2011년	23.1	6.3	11.6	28.2	7.6	18.6	3.0	1.6



【그림 Ⅲ-18】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부문(2011년)

- 육성·발전 장애요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자금부족”, “사업체의 영세성” 등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10인 이하 사업체수가 전체 90%를 상회하여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정부지원 미흡”, “제도규제 과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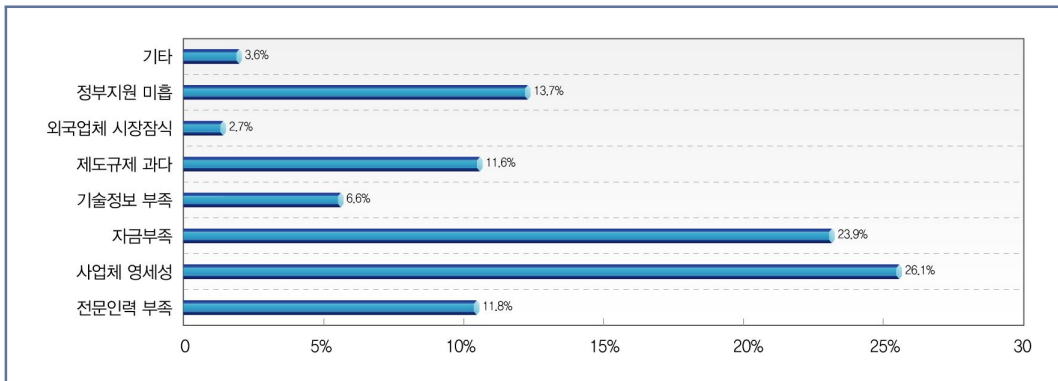




〈표 III-23〉 육성발전 장애요인

(단위 : %)

육성발전 장애요인	전문인력 부족	사업체 영세성	자금부족	기술정보 부족	제도규제 과다	외국업체 시장잠식	정부지원 미흡	기타
2009년	17.5	18.4	24.3	8	14.3	5.1	11.3	1.1
2010년	8.1	24.1	23.2	7.2	11.5	2.3	17.8	5.7
2011년	11.8	26.1	23.9	6.6	11.6	2.7	13.7	3.6



〔그림 III-19〕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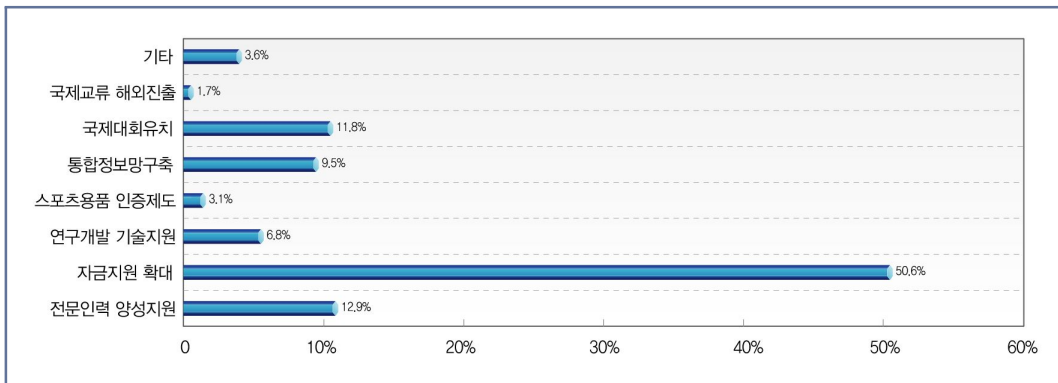
- 육성·발전 지원부문에서는 최근 3년간 “자금지원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지원정책이 점차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스포츠산업 특성상 영세한 업체가 워낙 넓은 범위와 다양한 업종으로 존재하여 하위 업종별 구분을 통하여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대회 유치가 정부지원부문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등 큰 규모의 국제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표 Ⅲ-24〉 육성발전 지원부문

(단위 : %)

육성발전 지원부문	전문인력 양성지원	자금지원 확대	연구개발 기술지원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통합정보망구축	국제대회 유치	국제교류 해외진출	기타
2009년	20.6	42.9	14.2	2.9	9.4	5.3	2.6	2.2
2010년	13.4	43.7	7.5	1.8	11.2	12.7	3.3	6.4
2011년	12.9	50.6	6.8	3.1	9.5	11.8	1.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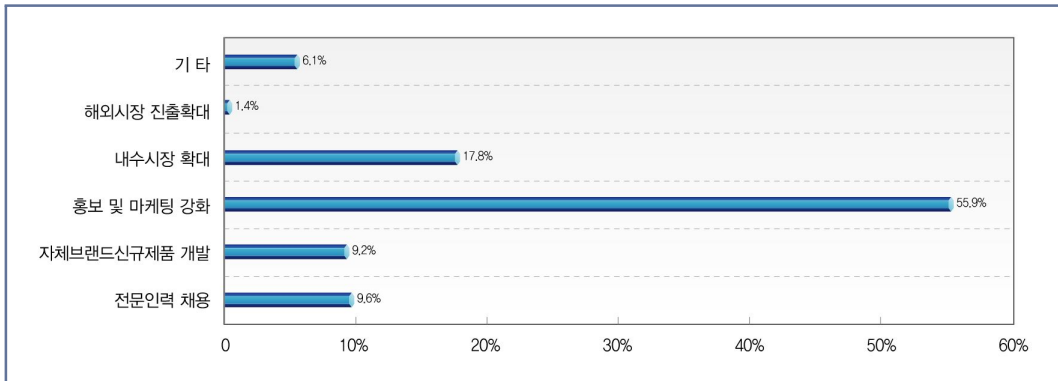
〈그림 Ⅲ-20〉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2011년)

- 매출 증대방안으로는 최근 3년간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영세업체의 자금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며 정부 지원정책에 있어서 감안해야할 중요사항으로 판단됨
- 스포츠산업에 대한 내수시장이 최근에 확대되고 내수시장의 경쟁력이 곧 세계시장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현실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25〉 매출 증대방안

(단위 : %)

매출 증대방안	전문인력 채용	자체브랜드신규제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 타
2009년	16.5	20.8	43.3	14.0	2.9	2.5
2010년	7.5	9.5	57.6	19.3	1.6	4.5
2011년	9.6	9.2	55.9	17.8	1.4	6.1



【그림 III -21】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2011년)

## 8. 성과 및 제언

### 8.1 성과

#### ■ 국가승인통계 유지

- 통계법 제18조 1항 및 제20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11321호)

#### ■ 모집단 보완

- 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잠정)에서 조사모집단의 포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스포츠산업 총 45개 산업세세분류 중 21개 산업세세분류의 모집단을 보완한 명부

#### ■ 조사표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유도를 위하여 응답자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과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QR코드 삽입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 조사결과 내검 및 자료처리

- 2010년 기준조사와는 달리 통계청의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실행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의 기획부터 보고서 생산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국가통계생산 표준프로세스(KSBPM : Korea Statistics Business Process Model)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시킨 업무프로세서로 기관 간 통계경험과 전문성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기획에서 생산, 서비스, 자료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범용 통계정보시스템
- 유사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영공시자료 등을 수집하여 조사자료와 비교·검토, 수준점검을 통하여 자료의 일관성, 정합성, 정확성을 제고
  - ※ 조사자료 검증 및 수준분석을 위한 비교자료



- 2012년 사업체기초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DART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 ■ 현장조사

- 조사대상 표본수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어 업무량(표본수)이 적은 지역은 조사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방청(사무소)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수행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스포츠음료 제조업,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개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 스포츠산업 통계체계 네트워크 구축

- 2011년 기준조사는 통계청 통계대행과의 협조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체계를 구축
- 표준지침(스포츠산업실태조사 조사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조사과정, 조사원교육, 통계청 지방분소와 연계, 자료처리 등 전반적인 조사체계 구축
- 스포츠산업 통계의 유통을 위한 온라인 체계 구축(www.spobiz.kr)
- 조사시기는 매년 통계청 사업체 기초조사 후 7월에 실시

## 8.2 제언

### ■ 표본명부

- 동 조사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모집단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 가능하므로 향후 조사시에도 모집단 확보 및 보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국 사업체조사 활용 및 관련 산업 유무, 최신 모집단 자료 수집, 행정자료 등을 통한 모집단 보완 등을 통하여 정확한 표본 추출틀이 작성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의 재분류

- 산업분류의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분류내에 산업분류간 동질성이 부족하여 특성항목별 조사사항에 애로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회전목마 제조업, 기타 흥행장용품 제조업은 포함되나 유원지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기원 운영업 등이 제외되며, 복권발행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은 특성항목인 연간 이용인원 수를 조사할 수 없음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정의되어 있는 세부항목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현장조사시 어려움이 있었음
  - 스포츠의류, 경기용 신발, 스포츠용 자전거, 흥행장용품 등의 기준, 골프용, 기타 운동용 가방, 스포츠오락용 기계, 바둑 및 장기 등의 포함 여부 등 구분이 곤란
- 스포츠산업분류의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스포츠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세세분류는 스포츠산업 세분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개정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2012년 기준조사에 활용

#### ■ 조사결과

- 2010년 기준 조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체 및 매출액을 수정함에 따라 전년 조사결과가 일부 보정되었으므로 자료 활용시 참고
  - (전년) 조사결과 매출액 33.9조원 → (수정) 보완결과 매출액 34.5조원
-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함에 따라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결과 활용시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공표단위를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예산에 따른 최적의 표본을 산출하였으나, 보다 신뢰수준이 높은 자료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본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표단위인 중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공표를 위해 최저 표본수를 확대(최소 4,500개 필요)

#### ■ 조사방법

- 조사기준과 기업체 회계기준의 차이에 따라 사업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총량 추정에 변수로 작용하므로 추후 조사 시 조사범위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부기관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사업실적으로 조사
    -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스포츠토트의 경우 각각 부산광역시, 창원시,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사업자로 기업회계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사업실적임



## IV 부 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어 정의
4. 조사표와 결산서 관계
5. 조사표







**【부록 1】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명	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품목명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1	기타 비알루미늄류 제조업	1-1-1	11209	기타 비알루미늄류 제조업	스포츠음료(알카리성 이온음료)
	1-2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1-2-1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캠핑용 직물제품
			1-2-2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구명자켓, 구명벨트
			1-2-3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제조
			1-2-4	14199	그외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스포츠의류 부분품
	1-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3-1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등산용 배낭
			1-3-2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1-3-3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1-4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1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1-4-2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범선, 요트, 카누, 카약
			1-4-3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스포츠용 자전거, 자전거 부품
			1-4-4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4-5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4-6	33303	낚시 및 수렵용품 제조업	
			1-4-7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4-8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볼링용구, 당구용구	
1-4-9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기타 흥행장용품			
2. 경기 및 오락 스포츠업	2-1	경기장 운영업	2-1-1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2-1-2	91112	실외경기장 운영업	
			2-1-3	91113	경주장 운영업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2-1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2-2-2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2-3-1	91121	골프장 운영업	
			2-3-2	91122	스키장 운영업	
	2-4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1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2-4-2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4-3	91133	수영장 운영업	
			2-4-4	91134	볼링장 운영업	
			2-4-5	91135	당구장 운영업	
			2-4-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2-4-7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2-4-8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2-4-9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			
2-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2-5-1	91231	낚시장 운영업		
		2-5-2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	
2-6	캠블링 및 베팅업	2-6-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스포츠토토	
		2-6-2	91249	기타 캠블링 및 베팅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베팅시설	
2-9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2-9-1	73901	매니저업	스포츠인 매니저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3-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1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3-1-2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및 부품 도매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3-2-1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2-2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스포츠용 자전거 소매
	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3-3-1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4-1-1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4-1-2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댄스교습

## 【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 - 스포츠산업분류 부문

### 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1.1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분류코드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콜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여부를 불문하며 천연광수 및 천연탄산수를 생산하여 병에 포장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강장음료 제조
- 가당음료 생산
- 캔커피(음료) 제조
- 스포츠음료 제조
- 곡물음료 제조
- 인삼드링크 제조
- 캔커피 및 캔차류 제조

〈제 외〉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5994)
-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1202)

〈색인어〉

캔커피(음료)제조, 가당음료수제조, 가향탄산음료제조, 감주제조, 강장음료제조, 건강음료제조, 곡분음료제조, 과실음료제조(희석된것), 과실주스제조(희석음료), 과실향음료제조, 과즙음료제조(희석음료), 광수생산, 광천수제조, 구근제음료제조, 넥타제조(음료)



## 1.2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 분류코드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타포린 직물 또는 캔버스 직물로 천막, 캠핑용 텐트, 차량용·기계용·가구용의 걸뒹개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차양 제조
-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
- 구명대 제조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 제조
- 돛 제조

〈제 외〉

- 구명자켓 및 구명벨트 제조(13229)

〈색인어〉

차광막제조, 캐노피천막제조, 파라솔제조(섬유제), 걸뒹개제조(캔버스제품), 구명대제조(캔버스제품), 기계커버제조(캔버스제품), 덮개제조(캔버스제품), 돛제조, 매트리스제조(압축공기식), 범포제품제조(배낭 우편낭 가방제외), 압축공기식매트리스제조(캔버스제품), 야영용직물제품제조(텐트등캔버스제품), 자동차용덮개제조(캔버스제품), 자동차용커버제조(캔버스제품), 차양제조(캔버스제품)

### 분류코드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기타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먼지 털이개 제조(직물제)
- 세탁보 제조
- 직물제 마스크 제조
- 깃발 제조
- 낙하산 제조
- 구명벨트 제조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구명자켓 제조
- 신발류 끈 제조
- 드레스 패턴 제조
- 페넌트 제조
- 텐트 제조

〈제 외〉

- 구명대 및 캔버스제품 제조(13224)

〈색인어〉

안경닢이 수건제조, 토시제조(직물), 패턴제조(의류), 거즈마스크제조(방직용섬유제), 걸레제조(직물제), 관절지지용직물제품제조, 구명벨트제조(안전벨트포함), 구명재킷제조, 국기제조(직물제), 근육지지용직물제품제조, 기(旗)제조, 깃발제조(직물제), 나이론제보자기제조, 낙하산제조, 냅킨제조(섬유제)

#### 분류코드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남녀용 셔츠, 블라우스 및 체육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된다.

〈예 시〉

- 블라우스 제조
- 체육복 제조

〈색인어〉

등산복제조, 경기복제조, 남자수영복제조, 남자용셔츠제조, 블라우스제조, 블라우스제조, 셔츠브라우스제조, 셔츠제조(남녀용), 수영복제조(남녀용), 스키복제조(기성복), 스키슈트제조, 여자수영복제조, 옷제조(셔츠및체육복 ; 편조의복제외), 와이셔츠제조, 운동복제조(편조의복제외)

#### 분류코드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특수 의복 및 의복 부분품의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잠수복 제조
- 방사선 예방보호복 제조
- 특수환자용 의복 제조
- 우의 및 방수복 제조
- 의류부분품 제조
- 가운류(종교의식복, 학사복 등) 제조

〈색인어〉

수의제조, 무대의상제조, 방탄복제조, 가운제조(종교의식복 학사복 법복등), 교통안전용야광복제조, 레인코트제조, 방사선보호복제조(고무제제외), 방수복제조, 방열복제조(고무제제외), 상복제조, 소방용방열복제조, 승복제조, 우비제조(의복), 우의제조, 의류부분품제조

### 1.3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분류코드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가방, 각종 기구 및 용품의 보호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목재 또는 금속 등의 보강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시〉

- 트렁크 제조
- 등산용 배낭류 제조
- 공구백 제조
- 안경 케이스 제조
- 사진기 케이스 제조
- 악기 케이스 제조
- 골프 가방 제조

〈제 외〉

- 개인 휴대용품용 지갑류 및 유사케이스 제조(15121)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색인어〉

가방제조(종이제외 핸드백제외), 가죽가방제조(핸드백제외), 가죽제백제조(핸드백제외), 가죽제서류가방제조, 가죽제케이스제조(지갑및핸드백제외), 가죽제품제조(가방및보호용케이스), 가죽케이스제조(핸드백및지갑제외), 공구백제조(플라스틱봉투 종이가방제외), 광학기구용케이스제조(플라스틱봉투 종이가방제외), 권총케이스제조, 금속보강여행용가방제조, 나이론제가방제조, 날붙이가죽케이스제조, 등산용가방제조, 등산용배낭제조

#### 분류코드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 플라스틱 신발 제조
- 발레용 신발 제조
- 각반 제조
- 짚신 제조
-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제 외〉

-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5220)

〈색인어〉

종이신발제조, 군화제조(전투화), 나막신제조, 나무신발제조, 농구화제조, 등산화제조, 목제신발제조, 발레용신발제조, 방수신발제조, 비닐제샌들제조, 비닐제슬리퍼제조, 비닐제신발제조, 비치샌들제조, 샌들제조(비정장용), 소가죽제신발제조(구두류제외)



## 분류코드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신발 갑피 제조
- 안창 제조(신발용)
- 축구화 밑창 제조
- 뒷굽 제조(신발용)
-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 야구화 밑창 제조

〈색인어〉

가죽신발재료제조, 갑피제조(신발용), 구두힐제조(플라스틱제), 뒷굽제조(신발용), 밑창제조(신발용), 소가죽제신발갑피제조, 신발갑피제조, 신발뒷굽제조, 신발밑창제조, 신발바깥바닥 제조, 신발부분품제조, 신발부속품제조, 신발외창제조, 신발용가죽지지물제조, 신발용보강재 제조

## 1.4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분류코드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로켓발사기, 소형화기 및 중화기와 총탄, 포탄, 폭탄 등 군사용 및 경찰용의 각종 무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렵용 및 경기용의 총포탄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시〉

- 폭탄 제조
- 비군사 무기 제조
- 가스총 제조
- 수렵용 무기 제조
- 총탄 제조
- 공기총 제조
- 경기용 무기 제조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제 외〉

- 폭발점화장치, 뇌관, 불꽃제품 및 화약 제조(20494)
- 탱크, 전차 제조(31910)
-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조(31310)
- 단검 제조(25931)

〈색인어〉

경찰봉제조, 무기제조, 가스권총제조, 가스총부분품제조, 가스총제조, 격발자제조(무기용), 경기용라이플제조(총), 경기용무기제조, 경기용산탄총제조, 공기총제조, 공기총탄환제조, 군용연발권총제조, 군용화기제조(소총 대포 곡사포), 권총제조, 기관총제조

#### 분류코드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모터, 풍력, 페달, 노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카누, 범선, 요트 및 이와 유사한 보트를 건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로 추진되는 소형 범선 및 구명정 등의 건조도 포함된다.

〈예 시〉

- 유람용 보트 제조(노용)
- 경기용 선박 제조
- 운동용 선박 제조
- 카약 제조
- 커터 제조
- 낚시용 보트 제조

〈제 외〉

- 선체가 오락용 보트와 유사하더라도 상업적 서비스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보트 제조(3111)

〈색인어〉

스포츠용보트건조, 강화플라스틱제요트제조(FRP), 경기용보트건조, 경기용선박제조, 낚시용보트제조, 모터보트제조(오락및경기용), 범선건조, 보트건조(오락및경기용), 보트제조(오락





용), 선박제조(오락및경기용), 소방범선건조, 아웃보오드모터보트제조, 오락용보트건조, 요트  
건조, 유람용보트제조(노용)

### 분류코드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한개 이상의 바퀴가 장착된 각종 비동력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배달용 삼륜 자전거 제조
- 신체장애자용 운송장비 제조
- 이륜자전거 및 기타 자전거 제조(원동기가 장착되지 않은)
- 환자용 운송장비 제조(동력식 또는 비동력식)

〈제 외〉

- 보조 원동기가 장착된 자전거 및 자전거용 사이드카 제조(31920)
- 어린이용 삼륜자전거 제조(3340)

〈색인어〉

환자용차량제조, 보행카 제조(노인용), 실버카제조(노인용), 유모차부품제조, 유모차제조, 경  
기용자전거제조, 경주용싸이클제조, 곡예용자전거제조, 기어제조(자전거용), 기어크랭크제조  
(자전거용), 방향지시기제조(자전거용), 배달용삼륜자전거제조, 백파이프제조(자전거부품), 브  
레이크와이어제조(자전거용), 브레이크제조(자전거용)

### 분류코드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장비체력단련용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헬스 장비 제조
- 체조용품 제조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렐 제조

•스프링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3302)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3309)

〈색인어〉

체력단련용장비제조, 배구대 제조, 축구골대 제조, 스트레칭기구 제조, 야외헬스기구 제조, 역기 제조, 덤벨 제조, 훌라후프 제조, 트렘폴린제조(체력단련용), 스프링보드제조, 아령제조, 육상경기용품제조, 육상용장비제조, 줄넘기제조, 철봉제조(운동용구)

#### 분류코드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특정 산업에 분류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소 제조

•미끄럼틀 제조

•회전 그네 제조

•놀이대 제조

〈제 외〉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놀이터용 제품은 제외

〈색인어〉

그네제조(놀이터용), 놀이기구제조(놀이터용), 놀이대제조, 놀이터용장비제조, 미끄럼틀제조, 시소제조(놀이터용), 어린이놀이시설제조, 어린이놀이터용장비제조, 파고라제조(놀이터용), 회전그네제조, 회전탑제조



### 분류코드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낚시장비 제조
- 인조미끼 제조
- 낚시용 망 제조
- 조류 유인용구 제조
- 수렵용구 제조
- 포충망 제조

〈제 외〉

- 양궁장비 제조(33309)
- 어망 제조(13922)
- 수렵 및 경기용 총포탄 제조(2520)
- 골프장비(공, 글러브 제외) 제조(33309)

〈색인어〉

낚시용고기망제조, 경기용네트제조, 낚시방울 제조, 낚시대손잡이 제조, 뜰채(낚시용) 제조, 강화플라스틱제낚시용구제조, 낚시대제조, 낚시릴제조, 낚시미끼제조(인조미끼), 낚시바늘제조, 낚시봉제조, 낚시용릴제조, 낚시용망제조, 낚시용부찌제조, 낚시용인조미끼제조

### 분류코드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코트 및 필드 게임용구, 등산장비, 동계경기용 장비, 수중경기용 장비, 펜싱용구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 펜싱용구 제조
- 탁구용 기구 제조
- 라켓 제조
- 공 제조(각종 경기용)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장갑류 제조(경기용)
- 양궁장비 제조
- 골프글러브 제조
- 설상 스키 제조
- 배트 및 스틱류 제조
- 골프장비 제조

#### 〈제 외〉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33301)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33303)
- 볼링 및 당구용 장비(볼 포함) 제조(33409)

#### 〈색인어〉

서바이벌용품 제조, 등산용삽 제조, 야구배트 제조, 야구방망이 제조, 오리발 제조, 인라인스케이트 제조, 죽도 제조, 쌍절곤 제조, 동계경기용장비제조, 등산용지팡이제조, 등산용철물제조, 등산장비제조(등산화 등산용배낭제외), 라켓제조, 로온테니스공제조, 로온테니스라켓제조

#### 분류코드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판 게임용 장비, 스포츠오락용 기계, 당구, 볼링 등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도박게임장비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예 시〉

- 바둑 및 장기 제조
- 스포츠오락용 기계 제조
- 유희용구 제조
- 유희용 카드 제조
- 당구용구 제조
- 카지노게임용 테이블 제조
- 체스 제조
- 도박게임장비 제조
- 오락용 테이블 및 장비 제조
- 실내게임용 기계기구 제조
- 테이블 게임용 기계기구 제조
- 볼링용구 및 관련 장치물 제조



〈제 외〉

- 축제, 카니발 또는 크리스마스장식용품(전기 제외) 제조(33999)

〈색인어〉

미니당구대 제조, 장기알 제조, 성인오락실빠징코 제조, 바둑알 제조, 당구용구제조, 도박게임장비제조(영상게임기제외), 레인제조(보울링용구), 바둑제조, 볼링공제조, 볼링볼제조(오락용품), 볼링용구제조, 볼링용볼제조, 볼링장치제조, 볼링핀제조, 스포츠오락용기계제조

### 분류코드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회전목마 및 기타 흥행장용품, 소도구 및 화장용품,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회전낙하장치(팔랑개비 등), 머리빗 및 머리핀, 리놀륨 및 유사 경표면 마루덮개 및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안전보호장비는 이곳에 분류한다.

〈예 시〉

- |                               |                      |
|-------------------------------|----------------------|
| •흥행장용품 제조                     | •유희장 용품 제조           |
| •빗, 헤어슬라이드 제조                 | •수동식 체 및 어레미 제조      |
| •마네킹인형 제조                     | •커얼링핀 제조             |
| •젤라틴제 이쑤시게 제조                 | •회전낙하장치(팔랑개비 등) 제조   |
| •커얼링크립 제조                     | •화장용 분첩, 패드 및 분무기 제조 |
| •축제, 카니발, 크리스마스장식용품(전기 제외) 제조 |                      |

〈제 외〉

- 귀금속제 머리핀 제조(3311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제조(28423)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색인어〉

인조손톱 제조, 크리스마스트리장식 제조, 버퍼(손톱손질용) 제조, 수족관제조(아크릴), 비너 제조(귀금속 보석제제외), 비닐제깔개제조, 비닐제카펫제조(덮개), 빗제조(귀금속제제외), 수동식어레미제조(체), 수동식체제조, 어레미제조(체), 여과용기제조, 이쑤시개제조(젤라틴제), 자동인형제조, 정수통제조

## 2.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2.1 경기장 운영업

#### 분류코드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수영장운영(관람석 있는 실내경기장), 실내체육관운영(관람석갖춘), 빙상장운영(관람석갖춘), 권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농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레슬링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배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배드민턴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 갖춘), 수구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수영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을갖춘), 실내경기장운영(관람석갖춘), 실내농구장운영(관람석갖춘), 씨름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유도 경기장운영(실내 ; 관람석갖춘), 태권도경기장(실내 ; 관람석갖춘)

#### 분류코드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육상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풋살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풋살축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종합운동장(실외 ; 관람석갖춘), 럭비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실외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야구장



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야외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운동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육상경기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축구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프로야구장운영(실외 ; 관람석갖춘), 필드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하키경기장(실외 ; 관람석갖춘)

### 분류코드 91113 경주장 운영업

경마, 자동차, 사이클, 동물 등이 경기할 수 있는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경륜장
- 경마장
- 자동차 경주장
- 투우장

〈제 외〉

-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발행소(91249)

〈색인어〉

경주마사육관리(경마장에서), 경륜경기장운영, 경륜장운영, 경마장관리사무소, 경마장운영, 경주장운영(경마 경륜등), 과천경마장운영, 동물경기장운영, 모터사이클경주장운영, 싸이클경기장운영, 오토바이경기장운영, 자동차경주장운영, 자전거경주장운영, 제주경마장운영, 투견장운영

## 2.2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분류코드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예 시〉

- 프로야구단
- 동계스포츠 클럽
- 체스 클럽
- 프로게임단
- 프로축구단
- 실업경기단체
- 사격 클럽

〈제 외〉

-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

〈색인어〉

스포츠클럽운영(프로야구단등), 이종격투기프로팀, 경기단체운영, 경륜(싸이클)경기단운영, 경마단운영, 농구단운영, 럭비단운영, 마라톤선수단운영, 배구단운영, 수영선수단운영, 실업경기단운영, 실업경기단체운영, 싸이클경기단운영, 씨름선수단운영, 아마추어농구단운영

#### 분류코드 91199 그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 산업에는 독립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경마 및 경주차 소유주, 코치,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건의 훈련활동 등이 포함된다.

〈제 외〉

-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85611)

〈색인어〉

스포츠지도자 협회, 단종발급(스포츠) 단체, 경기지원단체, 당구연맹, 합기도연맹, 봅슬레이 연맹, 싸이클연맹, 스쿼시연맹, 역도연맹, 감독(운동관련 ; 자영), 개사육훈련장, 개훈련소, 경기기록계원(자영), 경기인(자영), 경기프로모터





## 2.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분류코드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연습장(91136)

〈색인어〉

골프장운영(숙박시설과독립된), 골프코스 운영(연습장제외), 골프장운영(골프연습장제외)

### 분류코드 91122 스키장 운영업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1139)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

〈색인어〉

스키장운영(숙박시설 없는)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2.4 기타 스포츠 운영업

##### 분류코드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색인어〉

종합스포츠시설운영, 건강생활체육관운영, 육체미도장운영, 체력단련도장운영, 체력단련장운영, 체육관운영, 레포츠센터(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복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복합체육시설운영, 스포츠센터운영(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실내체육관운영(관람석없는), 어린이놀이터운영, 종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체육시설운영(종합운동시설 ; 경기장제외)

##### 분류코드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클럽

〈제 외〉

•무도장(91291)

•교육목적의 체력단련시설 운영(85611)

〈색인어〉

체력단련시설운영, 암벽등반장 운영(체력단련용), 클라이밍클럽운영(체력단련용), 휘트니스센터운영, 휘트니스클럽운영, 성장지원센터(체력단련목적), 주민자치센터(체력단련시설운영), 단전호흡시설운영, 보디빌딩시설운영, 보디빌딩업(체력단련시설), 헬스클럽운영



### 분류코드 91133 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1111)

〈색인어〉

수영장운영(관람석없는 ; 비경기장)

### 분류코드 91134 볼링장 운영업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볼링센터운영, 볼링장시설운영, 볼링장운영

### 분류코드 91135 당구장 운영업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당구클럽운영, 빌리어드클럽(당구장)운영 , 당구장운영, 포켓볼당구장

### 분류코드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색인어〉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운영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분류코드 91139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 스쿼시장
- 테니스장
- 롤러스케이트장
- 요트장
- 카누장
- 탁구장
- 야구연습장
- 승마연습장
- 조정장

〈제 외〉

- 오락용 사격장(91229)

〈색인어〉

풋살장, 게이트볼경기장, 공기총사격장운영(오락용제외), 국궁장운영, 궁도장운영(오락용제외), 눈썰매장운영, 라켓게임경기장운영, 라켓게임용운동설비운영, 롤러스케이트장운영, 배드민턴장운영(경기장제외), 석궁장운영, 수렵장운영(스포츠), 스쿼시장운영, 승마장운영, 썰매장운영

#### 분류코드 91291 무도장 운영업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무도장
- 댄스홀
- 콜라텍

〈제 외〉



- 무도유희주점 및 디스코클럽 운영(5621)

- 교육목적의 댄스교습소 운영(8561)

〈색인어〉

댄스장운영, 댄스홀운영, 무도장운영, 콜라텍(무도장)

### 분류코드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체육공원 운영

- 시민공원

〈제 외〉

- 유원지 운영업(91210)

-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0232)

〈색인어〉

공원관리사무소운영(자연공원제외), 시민공원운영, 공원관리사무소(체육공원 시민공원등), 체육공원관리사무소(체육공원), 근린공원, 시민공원운영(유원지제외), 오락공원관리운영, 체육공원운영

#### 2.5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 분류코드 91231 낚시장 운영업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료 낚시터 운영
- 실내 낚시장 운영

〈색인어〉

낚시장운영, 낚시터제공, 낚시터운영, 실외낚시장운영(유료), 유료낚시터운영

##### 분류코드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 수상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레저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 마리나업
- 오락용 낚시배 운영
- 오락용 보트임대(물놀이시설내)
- 해수욕장 운영

〈제 외〉

- 유료 낚시터 운영(91231)

〈색인어〉

스킨스쿠버 다이빙 체험, 레프팅체험제공, 바나나보트운영, 땅콩보트운영, 래프팅, 수상스키장, 해수욕장운영, 놀이용보트임대(물놀이시설), 마리나업, 보트임대(물놀이시설), 오락용낚시배운영, 오락용보트임대(저수지등 ; 물놀이시설내), 정박설비임대(승무원없이)



## 2.6 게임링 및 베팅업

### 분류코드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각종 복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포츠복권 발행
- 기입식복권 발행
- 즉석식복권 발행
- 복권판매소

〈색인어〉

즉석복권판매, 로또복권판매, 로또복권발행, 복권발행, 전자복권발행, 복권판매소운영

### 분류코드 91249 기타 게임링 및 베팅업

카지노, 슬롯머신, 카드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1113)

〈색인어〉

게임유기장운영, 경마진흥(TV경마장 ; 마권업), 내기도박장운영, 도박시설운영, 도박장운영, 룰렛게임장운영(도박), 마권영업(장외경마장), 빙고게임장운영(도박), 빠징코운영, 성인오락실(카지노등도박장), 슬롯머신운영, 주사위게임장운영(도박), 카드게임장운영(도박), 카지노운영, 판게임시설운영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2-7 기타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 분류코드 73901 매니저업

예술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일반적으로 공인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고객을 위하여 계약협상, 금전문제 관리, 경력홍보 등을 수행한다.

〈예 시〉

•유명인사 매니저

•모델 매니저

〈색인어〉

스포츠에이전시, 가수관리대리회사, 극작가대리서비스, 매니저서비스, 매니저업(개인관리대리), 매니지먼트서비스, 모델매니저서비스, 연예단체대리서비스, 연예인대리서비스, 연예인매니저, 예술인매니저서비스, 운동선수매니저서비스, 유명인사매니저서비스, 작가매니저서비스, 체육인매니저서비스

### 3.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 3.1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 분류코드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각종 운동 및 경기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운동장비 도매

•등산장비 및 용품 도매

•경기용품 도매

•등산화 도매





〈색인어〉

래프팅보트도매, 검도용품도매, 런닝머신도매, 헬스자전거도매, 벤치프레스도매, 헬스기구도매, 스노우보드장비도매, 승마용품도매, 인라인도매, 킥보드도매, 태권도용품도매, 하키용품도매, 스케이트도매, 경기용품도매, 골프공도매

**분류코드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자전거 등의 기타 가정용 운송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자전거 및 부품 도매
- 개인용 운송장비 도매(동력식)

〈색인어〉

바퀴도매(자전거), 휠체어도매(동력식), MTB(자전거)도매, 자전거도매(동력식), 휠체어도매, 리어카도매, 비동력운송장비도매, 사이클도매, 손수레도매, 운송장비도매(비동력식), 자전거도매, 자전거부품도매, 튜브도매(자전거·수레용)

**3.2 운동, 경기용품 및 자전거 소매업**

**분류코드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및 경기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등산 장비(텐트 포함) 소매
- 펜싱, 검도 장비 소매
- 헬스기구 소매
- 코트 및 필드게임 장비 소매

〈제 외〉

- 낚시장비 소매(47640)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색인어〉

스노우보드장비소매, 아이스하키장비소매, 인라인스케이트소매, 홀라우프소매, 가정용골프네트소매, 건강기구소매(체력단련기), 검도용품소매, 검도장비소매, 경기용품소매, 골프장비소매, 공(볼)소매, 구기용볼소매, 궁도용품소매, 글러브소매(경기용), 동계스포츠장비소매

#### 분류코드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전거 소매와 수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예 시〉

-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소매
- 개인용 운송장비 소매(비동력식)

〈제 외〉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매(45)

〈색인어〉

개인용운송장비소매(비동력식), 리어카소매, 사이클소매, 손수레소매, 운송장비소매(개인용 ; 동력식제외), 자전거부품소매, 자전거소매, 자전거용품소매

### 3.3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분류코드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의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스키 임대
- 장난감 임대
- 자전거 임대
- 물놀이기구 임대
- 카누 임대

〈제 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관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시설에서의 물놀이기구 임대(91239)

〈색인어〉

스포츠용품임대, 레크리에이션용품임대, 스쿠버장비임대, 스노우보드임대, 게임기대여(오락용품), 경기용장비임대, 경기용품임대, 놀이게임기대여, 놀이용보트임대(물놀이시설제외), 물놀이기구임대(물놀이시설제외), 보트임대(놀이용 ; 물놀이시설에서의대여제외), 스키화임대, 여가용기기임대, 여가용품임대, 오락용기구임대

## 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4.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분류코드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축구, 체조, 무술 등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        |          |
|--------|----------|
| •태권도학원 | •축구교실    |
| •요가학원  | •체육 입시학원 |

〈색인어〉

스포츠교육기관, 국선도, 암벽등반(교육), 스쿠버(교육), 잠수기술교육(스포츠), 단전호흡교육, 기수련교육, 단월드운영, 단학수련교육, 짐볼교육, 체육입시학원, 경기운동강습업, 운동학교 운영, 검도장운영(교육위주), 격투기도장운영(교육위주)

### Ⅲ.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분류코드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바둑교육 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바둑 교실

〈색인어〉

레크리에이션교육기관, 놀이학교(유치원 어린이집제외), 종이접기교육(취미), 무도학원, 노래 교실(교육위주), 스포츠댄스교습, 레고블록을이용한교육, 가베교육, 바둑교습소운영, 바둑교실운영, 오락학교운영, 교습소(사교댄스교습소), 댄스교습소운영, 사교댄스교습소



### 【부록 3】 스포츠산업 관련 용의 정의

#### ○ 스포츠산업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를 기업활동의 수익대상으로 바라보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하는 일체의 생산활동

#### ○ 스포츠음료

스포츠음료는 스포츠 현장에서 적절한 수분 공급 및 에너지원의 부분적 재보충을 목적으로 하여 제조된 당분과 전해질 등이 포함된 기능성 음료

〈예 시〉

- 포카리스웨트(동아오츠카)
- 파워에이드(한국코카콜라)
- 파워 오투(농심)
- 게토레이(한국펍시콜라)
- 스포트라이트(광종)

#### ○ 캠핑용 직물제품

캠핑용 직물제품은 캠핑에 사용되는 텐트, 로프와 같은 직기에 걸쳐 짠 물건으로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의 제품

〈예 시〉

- 텐트(코베아, 콜맨 등)
- 침낭(네파, 카벨라스)
- 로프

#### ○ 구멍 자켓, 구멍 벨트

구멍 자켓과 구멍 벨트는 수상용 인명구조용을 목적으로 부력재 또는 co2 gas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예 시〉

•구명조끼(버팔로)

•구명벨트(씨울프)

#### ○ 스포츠의류 제조

스포츠 의류 제조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종목의 특성인 기능적, 활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의류제품

〈예 시〉

•르까프

•프로스펙스

•휠라

#### ○ 스포츠의류 부분품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예 시〉

•한길섬유

•고어텍스

•COLDBACK

•SILFINE

#### ○ 등산용 배낭

등산에 사용되는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형겅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예 시〉

•콜롬비아

•K2

•코오롱

•MILLET

#### ○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경기용 특수한 종목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의 제조



<예 시>

- 육상 스파이크
- 농구화
- 발레슈즈
- 테니스화

○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경기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운동화의 부품

<예 시>

- 축구화 밑창(파라마스 회사)

○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수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 경기용 총포탄은 경기에 사용되는 총포의 탄환

<예 시>

- 공기총(덕일, 신성산업)
- 총포탄((주)풍산)

○ 범선, 요트, 카누, 카약

범선은 바람을 이용한 선박으로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불리우며,

- 요트는 배안에 세워진 돛대와 고물(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정하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나아가는 선박
- 카누는 선수·선미가 뾰족하고 1개 이상의 노로 움직이는 경량의 소형 선박으로 정의
- 카약은 좌석에 앉아 발을 앞으로 하고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저어 빠르기를 겨루는 카누 경기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예 시〉

- 범선, 요트(베스트마린, 코오롱마린(구매, 대여업) 등)
- 카누, 카약(콜맨, K2 등)

#### ○ 무도장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

〈예 시〉

- 스타 무도장
- 천호 무도장
- 을지 무도장

#### ○ 체육공원 운영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운영

〈예 시〉

- 올림픽 공원
- 금정 체육공원
- 한강공원

#### ○ 스포츠토토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레저 게임(축구,농구,야구,골프 등)

〈예 시〉

- 스포츠토토
- 스포츠 프로토





### ○ 스포츠인 매니저

스포츠인 매니저는 선수의 입단, 연봉, 인도스먼트(광고, 협찬, 라이선싱, 출판 등), 미디어관계 관리를 큰 축으로하여 선수의 훈련지원, 재무관리, 문제해결 법적자문에 이르는 모든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

〈예 시〉

•IB스포츠

•세마스스포츠마케팅

### ○ 스포츠용 자전거

견고하고 전문산악용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MTB를 포함하여 일반온로드 위주로 달리면서도 MTB처럼 스포츠틱한 디자인과 구성을 가진 자전거(싸이클, 자전거모기용 BMX 등)

〈예 시〉

•삼천리

•코렉스

•알톤

### ○ 댄스교습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율동적인 예술 활동을 교습(밸리댄스, 탭댄스, 포크댄스, 사교댄스, 힙합댄스 등)

〈예 시〉

•DFA Academy

•슈퍼브댄스 스튜디오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부록 4】 조사표와 결산서의 관계

##### 〈도소매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총매출액	1,234			
상품매출액	1,000			
기타영업수익	234			
II. 매출원가		740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기초상품매출액	45			
2. 당기상품매출액	735			
3. 기말상품매출액	40			
III. 매출총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수도광열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 〈(교육)서비스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⑧항 (1) 매출액	
1. 상품매출액	234			
2. 용역매출액	1,000			
II. 매출원가		623	⑧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상품매출원가	123			
2. 용역매출원가	500			
III. 매출총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⑧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수도광열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⑧항 (3)영업이익	



〈제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금 액		조사표 항목	비 고
I. 매출액		1,234	㉔항 (1) 매출액	
1. 제품매출액	1,000			
2. 상품매출액	234			
II. 매출원가		623	㉔항 (2)영업비용 가.매출원가	
1. 제품매출원가	523			
2. 상품매출원가	100			
III. 매출총이익		494		
IV. 판매비와 관리비		380	㉔항 (2)영업비용 나.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200			
2. 퇴직급여	20			
∴	∴	∴		
11. 소모품비	5			
12. 기타	30			
V. 영업이익		114	㉔항 (3)영업이익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부록 5】 조사표



승인(합제)번호  
제 11321 호

##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과학연구원)와 통계청에서는 「2011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2012. 9. 3. ~ 9. 14.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되며,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응답내용 및 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작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는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 조사원ID	★ 행정구역 분류번호	★ 산업분류	★ 사업체 고유번호

일반사항	귀 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	남 여	3 창설연월	년	월	
4 소재지	읍·면·(법정)동 빌딩·시장·상가	리	번지 동	호 층	동 반 호
5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체명 : 법인명과 실제 통용명칭이 다를 경우 공식적 명칭을 기재한 후 ( )에 실제 통용명칭을 기입  
\* 창설연월 : 현재의 산업활동(업종)을 시작한 시기

6 조직형태	귀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6-1 사업체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체 <input type="checkbox"/> 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회사외의 법인 <input type="checkbox"/> 비법인단체 <input type="checkbox"/> 국가·지방자치단체				
6-2 자본금	회사법인인 경우만 응답 <input type="checkbox"/> 단독사업체 <input type="checkbox"/> 본사·본점 <input type="checkbox"/>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천원	백원	십원	원

\* 회사외의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 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으로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7 종사자 수** 2011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및 인력충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명, 백만원

	종사자 수			연간 급여액	인력충원 현황	
	남	여	계		'11년 신규자수	'12년 신규자수 (계획된 인원 포함)
합계(①+②+③+④+⑤)				천의 백의 십의 억 천만 백만원		
① 상용근로자				/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⑤ 기타종사자						

- ※ 2011.12.31. 현재 종사자 수를 기입(연말기준). 단, 계절성을 지닌 사업체(수영장, 스키장 등)는 영업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입
-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모두 포함함)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③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재법인사업체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 ⑤ 기타 종사자 : 일반 실적이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  
(기분급 등 일정급에는 없으며, 만약 일정급을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기입)
- ※ 연간급여액은 상용근로자의 급여·재수당·상여금을 합친 금액을 기입하되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제외(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8 사업 실적** 2011년 1년 동안 영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제표 작성 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 해당란에 √ 표시

※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사업실적은 재무제표와 일치할 시이고, 재무제표를 미작성 시 실제 사업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

		십조	조	천의	백의	십의	억	천만	백만원
(1) 매출액(수익액)	2011년 1년간 영업활동(제품제조, 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으로 얻은 수익액(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중 해외로 수출한 매출액							
(2)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비용								
	가. 매출원가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출원가 비용							
	· 제조업(제조원가)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							
	· 도소매업(매출원가)	상품매입비 등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 서비스업(매출원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나.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기타영업비용 등								
(3)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8-1 스포츠산업 비중** 내수·수출 및 스포츠산업·비스포츠산업 비중을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단위: %

총 매출액 비중	내수 매출액 비중		수출 매출액 비중	
	① 스포츠산업	② 비 스포츠산업	③ 스포츠산업	④ 비 스포츠산업
100.0% (①+②+③+④)				

※ 내수 매출액 및 수출 매출액 비중을 스포츠산업과 비 스포츠산업으로 구분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

### III.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 9 사업체 경영전망

전반적인 국가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귀 사업체의 입장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경영 현황 및 전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2011년(2010년 대비 증감률)	2012년(2011년 대비 증감률)
( )%	( )%

\* 증감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하며, 2012년 매출액이 2011년 대비 5.5% 증가가 예상될 경우 +5.5%, 10.0% 감소가 예상될 경우 -10.0%로 기입

#### 10 사업의 종류

귀 사업체의 「사업의 종류」를 11~14에 먼저  표시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의 종류	사업 내용	비고
	무엇을(제품, 서비스 내용) / 누구에게 / 생산·제공하였는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의류(체육복, 등산복 등)를 제조</li> <li>· 캠핑용제품(텐트, 침낭)을 제조</li> <li>· 당구장·수영장·골프연습장 등을 운영</li> <li>· 자전거를 일반소비자에게 소매</li> <li>· 태권도를 학생을(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교습</li> </ul>	
1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11-1 항목
12 경기 및 오락스포츠 서비스업		→ 11-2 항목
13 운동·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 11-3 항목
14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서비스업		→ 11-3 항목

#### 11 특성항목

##### 11-1 상품별 구성비

스포츠용품별 내수 및 수입금액을 기입한 후 이를 다시 용품별로 비중을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금액 (백만원)	구 성 비 (%)						
	합 계	스포츠 음료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류	라켓류	기타
1 스포츠용품별 내수	100.0%						
2 스포츠용품별 수입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하며 수입은 원재료 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 11-2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고객 수)

2011년 영업한 개월 수와 연간 이용인원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연간 영업개월 수	( ) 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에서 2011년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파업, 휴업 등은 제외)</li> <li>· 한 달 간 정상적인 영업일수의 1/2 이상을 영업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li> </ul>
2 연간 이용인원(고객) 수	( )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원(고객)수를 유료 입장객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기입</li> </ul>

##### 11-3 고객연령별 매출액 구성비

매출액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단위: %

매출액 비중	1 7세 이하	2 8세~13세	3 14세~19세	4 20세~39세	5 40세~59세	6 60세 이상
100.0%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12 설문문항** 문항별로 가장 주된 것 하나만  표시를 하고, 「기타」인 경우는 ( )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2-1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스포츠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양성                | <input type="checkbox"/> 2 국산제품 품질 제고  |
| <input type="checkbox"/> 3 자체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 <input type="checkbox"/> 4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 <input type="checkbox"/> 5 대형화·전문화               | <input type="checkbox"/> 6 관련 정책부처 지원  |
| <input type="checkbox"/> 7 산·학·연 협력강화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

**12-2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스포츠산업이 육성·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부족     | <input type="checkbox"/> 2 사업체 규모 영세성     |
| <input type="checkbox"/> 3 자금부족       | <input type="checkbox"/> 4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
| <input type="checkbox"/> 5 제도 및 규제 과다 | <input type="checkbox"/> 6 외국업체의 시장잠식     |
| <input type="checkbox"/> 7 정부 지원 미흡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

**12-3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스포츠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양성지원        | <input type="checkbox"/> 2 자금지원 확대(융자확대 등)                    |
| <input type="checkbox"/>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input type="checkbox"/> 4 스포츠용품 인증제도(KISS마크) 활성화 및 국제인증획득 지원 |
| <input type="checkbox"/> 5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 <input type="checkbox"/> 6 각종 국제 대회 유치(월드컵, 올림픽 등)            |
| <input type="checkbox"/> 7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

**12-4 귀사의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

귀사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전문인력 채용     | <input type="checkbox"/> 2 자체 브랜드 및 신규제품 개발 |
| <input type="checkbox"/> 3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input type="checkbox"/> 4 내수시장 확대          |
| <input type="checkbox"/> 5 해외시장 진출 확대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            |

\*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비 고	* 휴·폐업, 파산에 중립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응 답 자	조 사 담 당 자
	부 서			
	성 명			
	전 화	( ) -	( ) -	





■ 발행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수행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본 통계보고서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 있으며,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12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